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초등학교 교육 종사자의 안전의식 실태분석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위 국 환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Analysis of safety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chool education worker
on school safety accidents



by

Kuk Hoan W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ugust 2017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초등학교 교육 종사자의 안전의식 실태분석

지도교수 강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위 국 환

Analysis of safety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chool education worker on school safety accidents

Adviser: Prof. Seung Hee Kang

by

Kuk Hoan W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ugust 2017

위국환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08월 25일



주 심 철학 박사 주 동 범 (인)

위 원 철학 박사 이 현 민 (인)

위 원 교육학박사 강 승 희 (인)

- 목 차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6
- 3.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6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유형 8
- 2. 학교안전교육의 현황 16
- 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실태 22
- 4. 선행연구 고찰 27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54
- 2. 연구절차 55
- 3. 조사도구 56
- 4. 자료의 처리 58

IV. 연구 결과

- 1. 학교안전도에 대한 교육종사 직종별 인식 차이 60
- 2.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종사 직종별 인식 차이 78

V. 결론 및 논의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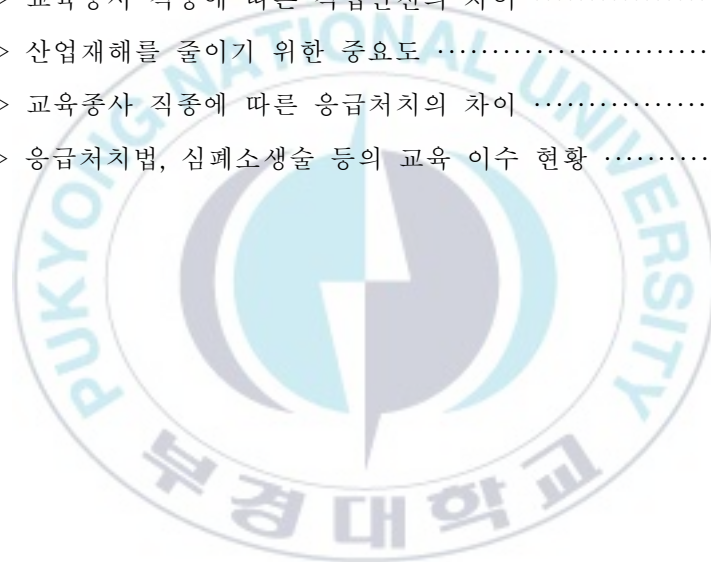
참고문헌 94

부록 97

- 표 목 차 -

<표 II-1>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분류	13
<표 II-2> 원인행위자별 분류	14
<표 II-3> 장소에 의한 분류	15
<표 II-4> 학교안전 7대 표준안(요약)	21
<표 II-5> 성별·대상별 표본오차 및 인터넷 과의존위험군 변동계수	49
<표 II-6> 성별·대상별 표본오차 및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변동계수	50
<표 III-1> 연구 대상자 특성	54
<표 III-2> 연구 진행 기간	56
<표 III-3> 설문지 구성 내용 및 문항 수	57
<표 III-4> 조사도구의 신뢰도	58
<표 IV-1>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를 당한 경험 분석	60
<표 IV-2>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주체 분석	61
<표 IV-3>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시간대 분석	62
<표 IV-4> 학생대상 안전교육 실시 한 학기 동안 횟수 분석.....	63
<표 IV-5> 학생대상 안전교육 1회 평균시간 분석.....	63
<표 IV-6> 학생안전교육 방법 분석.....	64
<표 IV-7> 학생들의 안전교육 평가 방법 분석.....	65
<표 IV-8>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 비중 분석.....	66
<표 IV-9> 학생들의 안전교육 부족 원인 분석.....	67
<표 IV-10>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 분석.....	68
<표 IV-11> 학생 대상 안전교육의 계획안 수립과 실행 분석.....	69
<표 IV-12>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 준비 현황 분석	70
<표 IV-13>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 활용도 현황 분석.....	71
<표 IV-14>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 정도	72
<표 IV-15>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분석.....	72
<표 IV-16>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주기 분석.....	73
<표 IV-17> 안전교육 실시횟수 분석.....	74
<표 IV-18> 학생들이 받는 1회 안전교육 예상 평균 시간 분석.....	75

<표 IV-19>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희망 주체	76
<표 IV-20>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효과적 방법 분석.....	76
<표 IV-21> 안전교육 평가의 적절성 분석.....	77
<표 IV-22>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생활안전 차이	78
<표 IV-23>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장소	79
<표 IV-24>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교통안전의 차이	80
<표 IV-25> 우리 사회에서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	81
<표 IV-26>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폭력 및 신변안전의 차이	82
<표 IV-27>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약물·사이버중독의 차이	83
<표 IV-28>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재난안전의 차이	84
<표 IV-29>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직업안전의 차이	85
<표 IV-30>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도	86
<표 IV-31>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응급처치의 차이	87
<표 IV-32>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 이수 현황	88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초등학교 교육 종사자의 안전의식 실태분석

위 국 환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전공

요 약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 자료제공과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각각의 안전교육의 인식과 안전의식의 실태를 분석하고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교육의 인식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종사 직종의 인식 차이에서는 정규직이 다소 높게 나온 이유는 비정규직 보다 체계화 된 안전교육을 꾸준히 받은 결과이나 비정규직은 안전교육을 정규직보다 제대로 받지 않은 결과이다.

학교에는 성장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그 학생들의 예측 불가능한 안전사고들의 발생요인을 항상 내재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도 학생들과 교육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 이는 비정규직도 체계화된 학교 안전 교육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 및 증설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종사자의 인식 차이에서도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책임감이 보다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도 정규직에 준하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학생들 대상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는 물론, 학생생활과 관련된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련 모든 활동을 학생,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안전의식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하고 안전교육이 실시 및 계속되어야 한다.

Analysis of safety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chool education worker on
school safety accidents

Kuk Hoan W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preven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and to show the importance of school safety education and the awareness of safety education for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in elementary school. We analyze and understand the actual state of safety consciousness.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opinions for the recognition of safety education for non - regular workers and the improvement of safety consciousness.

First, for safety education,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education occupations is that the regular workers are somewhat higher than the non-regular workers because they have received more systematic safety education than the non-regular 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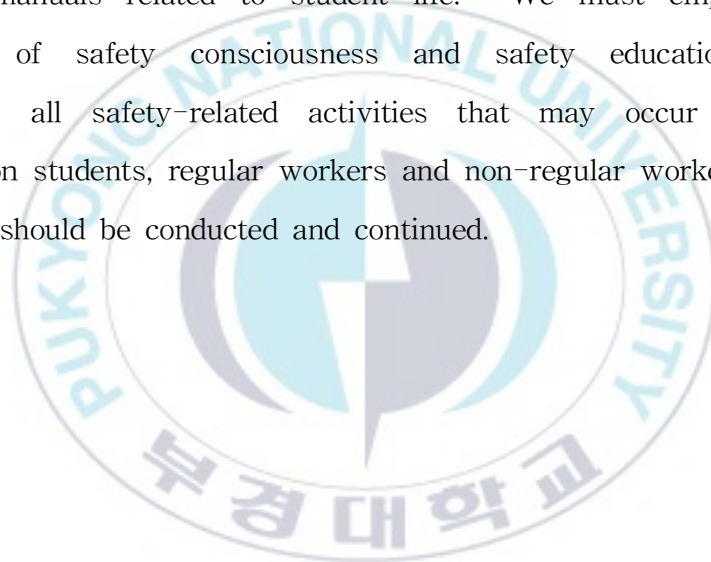
The school always has a variety of educational activities for students during the growing season and the causes of the students' unpredictable safety accidents. Like regular employees. Irregular employees spend a lot of time in the education field. This is an important reason why irregular workers need systemized school safety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Office of Education opened a safety education training program for irregular workers.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it.

Secon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employees about safety consciousness resulted in more responsibility for regular employees than non - regular workers. Non-regular worke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reatment so as to have pride and sense of duty.

The government distributes materials for student safety education as well as manuals related to student life. We must emphasize the necessity of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education without classifying all safety-related activities that may occur at school, focusing on students, regular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Safety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and continu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안전사고는 과거에 시설물·기계·장비의 결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는 다르게 의식부재(Human Error)로 인한 사고가 많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최근 사고는 2014년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세월호 침몰참사’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안전의식부재’에 의한 사고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교안전사고 통계분석 및 예방정책수립 방안연구(남윤신, 2014)”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는 2008년도 62,794건에서 2013년도 105,323건으로 67.7%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학생 사고가 104,903건으로 전체의 99.5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사고 피해자는 학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접수된 사고 건수 중에도 초등학교가 35,165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중학교 33.4%, 고등학교 25.8%, 유치원 6.3% 순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을 보면 체육수업에서 전체의 28.35%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그 외 점심시간, 휴식·청소시간, 수업시간 등의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들 시간의 공통점은 학생들의 주의력이 분산되는 시점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내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남윤신, 2014:18~22).

학교안전사고는 학생의 생명, 신체 또는 정신에 손상을 끼치는 현상을 말하며 통상 학교사고, 학생사고, 학교재해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개념이 학술적으로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체로 학

교안전사고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학교사고란 학교를 둘러싸고 피해를 입은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고 또는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생긴 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고를 말한다. 학교사고가 갖는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지만 신체적으로는 가장 활동이 활발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많은 인원의 학생이 한정된 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는 집단학습생활 속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우발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박세철, 2015:1~2).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학교의 분위기, 교사나 친구들과의 관계 등은 학생들의 성장 발달 및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강윤현, 2016;1). 학교도 가정이나 사회와 마찬가지로 갖가지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활동력이 왕성한데 비해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니 사고의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안전사고의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박재향, 2002;1).

한편, 학교 밖의 사정도 만만치가 않다. 경제·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고,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에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사회폭력의 영향으로 학교폭력이 예전에 비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학교안전사고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박재향, 2002;1).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수많은 안전사고의 문제는 학교와 학교 밖에서 동시에 발생하지만 학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 해 평균 6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고, 2013년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누적 인원 28만 명이라는 통계만 보아도, 최근의 국내 학교 상황이 학생들의 발달 과제 수행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강운현, 2016:1).

교육부의 “학교폭력통계(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학교폭력은 1만 9천 521건으로 2013년 1만 7천 749건보다 10%가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여 학생 1천 명당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72건에서 2014년 3.09건으로 13.4% 증가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은 우울, 외로움, 불안감, 좌절감, 무기력함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괴롭힘의 주된 요인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높아지자, 교육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괴롭힘이나 피해자들의 후유증은 이전보다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오승연, 2015:1).

한편 학교폭력안전사고 만큼이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터넷 과의존 실태 조사(권미수, 2015)”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1.6%로 10명 중 3명이 위험군에 속했다. 이 비율은 성인 13.5%와 비교해 볼 때 약 2.3배 높은 것이다. 인터넷 과의존의 경우도 13.1%로 2011년 이후 계속 상승 추세이다. 인터넷 과의존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과 수면에 장애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 또한 가상세계 지향, 금단현상, 내성 등의 장애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학교의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것을 막고, 중독된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인 학습·훈련을 통해 안전의식과 대응 방식을 체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하지만 학교는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14년 11월에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대책을 통해 유아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 국민의 안전습관·의식 내면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수업·교육활동 보장 및 교육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의 주요 과제로는 체험중심의 체계적 안전교육 시행, 교원을 안전교육 전문가로 육성하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및 시설여건을 조성하기, 대학안전 관리강화와 교육 분야 안전인프라구축 등이 있다.

2015년에는 후속조치로 유·초·중·고 발달 단계별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을 발표하여 학교에 보급시켰다. 이 표준안은 학생 참여형의 안전교육으로 생활/교통/폭력·신변/약물·사이버/재난/직업/응급처치 등에 대해 학생발달단계(유아부터 고교까지)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교육부, 2016). 이처럼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려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이창희(2010;42)가 조사한 학생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에 비하여 초등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양쪽 모두에게 안전교육을 받은 학생이 담임교사, 보건교사 각각의 교육자에게 안전교육을 받은 학생보다 안전의식이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담임교사, 체육교사, 보건교사 등 단일 교육자에 의한 안전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것으로 여러 부류의 교육자에게 안전교육을 받았을 때 안전의식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의 경우처럼 교육받은 대상자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에게 실시된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안전교육은 기초적인 습관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초등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그들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절충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박재희, 2013;2),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의식을 체화시킨다면 미래의 사회와 가정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안전의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범위”(한승희, 1999),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태도에 관한 연구”(이정준, 1999),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책임한계”(박재향, 2002),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교사 인식 분석”(구현자, 2005),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창희, 2010),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터한 대전광역시 초등학교의 안전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박재희, 2013), “학교사고 발생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판단 기준”(최기영, 2014),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박세철, 2015), “괴롭힘 상황에서 자기 주장성과 주변인의 행동유형의 관계”(오승연, 2015), “학교폭력 치유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임상적·신경심리학적·뇌구조적 변화”(강윤형, 2016)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교사의 안전의식과 태도가 학교안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 동안의 학교안전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실태를 연구한 사례와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교사의 안전의식 등은 다수 있었으나 학교에는 방과후 강사와 돌봄사 등에 관한 안전의식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학교는 교사만 근무하고 있는 곳이 아니며, 최근 교사 이외에도 방과후 강사, 돌봄사 등의 교육종사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안전의식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교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

으며, 교사 이외 교육종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안전의식 뿐 만 아니라, 그 밖의 교육종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추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의식에 대해 교육종사자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사의 안전의식과 그 밖의 교육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함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 방안이 마련된다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 문제

첫째, 학교안전도에 대한 교육종사 직종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종사 직종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가. 용어의 정의

(1) 위험 : 어떤 예기치 않은 사상이 발생하는 불확실성, 손해를 입을 기회로 정의되며 재물이나 사람에게 존재하는 물리적 위태와 인간의 정신적 요인 등 잠재적 사정이나 태도에 기인하는 위험요소와 잠재의식적 손실 욕구의 심리상태에 대한 총체적 사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현기,

2014).

(2) 안전 : 사전적 의미로 안전(安全)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나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 정서적으로 안전하며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이며, 또한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환경을 조성한 상태를 말한다. 즉 인간의 가장 편안한 상태 재해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이은혜, 2014).

(3) 리스크 : 어떤 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불확정적이며, 더 더욱 우연히 발생하고 그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가 예측손해를 상회할 것인가의 불확정성을 말한다.

(4) 7대 안전교육 : 교육부가 제시한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직업안전, 응급처치를 학생들의 발달단계별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든 표준안을 의미한다.

나.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 교육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설문지로 조사함으로써 응답자에게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이 불가능하며 설문지법의 한계를 지닌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유형

가.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학교안전사고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학교안전사고’라는 말만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다. 다만 학생과 학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정도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법률문화연구회(1970:13)가 학교안전사고를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사고’라고 정의한 것처럼 학교안전사고는 학교라는 사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통칭하기 때문에 발생 장소와 사고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박현근, 2007:4).

최근에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학교는 안전사고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하였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안전사고의 개념도 다시 정리되었다. 과거에는 ‘학교안전사고’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학교안전사고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학교사고(school accident)’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말 또한 법률적인 정의 없이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학교사고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사고, 학생사고, 학교재해 등으로 혼용된다. 구분을 하자면 학교사고란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직원이 학교에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도난, 화재사고를 포함하기도 한다. 때로는 교육의 장애 있어서 학생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나 학부모 또는 외부인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것도 포함시

키는 경우가 있다.

학생사고는 사고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의미일 때 쓰이기도 하며, 학생재해는 사고를 당한 아동의 보상구제를 고려할 때에 아동의 인권보장을 사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시민의 인권 보장, 또는 노동재해에 있어서 노동자의 인원보장 등과 동질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의도로 쓰일 때 사용한다(한승희, 1999;7).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정확한 규정이지만, 수업종료 후 일과시간 내, 운동장 개방에 따른 늦은 시간대, 학생 부주의(다툼) 등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고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의 개념은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김현기, 2014;14).

나.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으로 인정받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포함한다. 교육활동으로 인정받는 학교 내·외에서 행하는 수업, 특별활동, 과외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의 활동,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의 구성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불법행위와는 다르다. 학교안전사고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주의 산만에 기인한 학생 스스로의 사고가 대다수의 경우를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안전사고가 예기치 못한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급 별로 학생들의 발달단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인지적인 면에서 아직 미숙하여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모방심과 모험심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경우는 발달 단계상 모방심과 모험심이 강해서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적다. 따라서 여러 매체를 통해 본 장면을 흉내 내거나 위험한 장난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학교안전사고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 가능한 개연성이 늘 잠복해 있다. 학교는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들, 혈기왕성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러한 학교에서 일반 교과시간이나, 교육과정상 위험을 내포한 교과시간, 휴식시간 등 교사가 입장하거나, 입장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학교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단체 공연회관람, 소풍, 수학여행, 숲 속의 식물 및 곤충 채집 등 관찰 활동 등에서도 안전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사 개인당 감독할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국가들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을 보아도 학교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학교의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므로 현행 교육법상에는 학교설립의 주체에게 강한 교육조건 정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4조). 그러나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고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학교설립자의 영조물에 대한 책임으로서, 학교건물의 안전시설에서 오는 광범위한 사고가 대부분 학교시설 정비 미비에서 오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학교설립주체와 교원 그리고 학생 등 공교육 제도 하에 운영되는 학교는 매체로 연관되어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 제3조(교사) 내지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및 제

17조(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의거해 학교 설립 주체에게 교수·학습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교육조건 정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학생사고는 내재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요인의 외부적 표출이다. 학교는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이나 지식과 인격을 겸한 전인적인 인간의 형성을 추구하는 사회의 조직체이지만 현실은 진학을 위한 시험만을 준비하는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진학을 하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들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즉, 학교의 교육적 가치, 규범, 질서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대인관계나 주변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불균형 상태에 놓이는 학생들의 불만족은 학교사고 발생의 잠재적 요인이 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에는 학교 폭력도 포함된다. 인터넷 발달로 학교폭력 조직이 일반화, 광역화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폭력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분 없이 일상화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는 실태상의 특수성을 가진다. 학교 설치자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해 문제에서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비교해서 보상능력에 있어 압도적으로 커다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당해 사고에 관한 제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자료 등은 일반원칙에서 볼 때는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원고 즉, 피해자보다도 오히려 학교 측이 입증능력의 문제에 있어 그 대부분을 쥐고 있음으로 학교는 커다란 사회적 존재로서 일정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입장에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자는 학생·아동이라는 일반적으로 피교육자에 한한다. 따라서 교직원이나 실습교사 혹은 일반인이 학교 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노동 재해 혹은 일반 불법행위 등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성질의 문제가 된다.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사고의 대부분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이며, 불

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적 인과관계가 작위의 경우만큼 단순명쾌하지 않다. 그리고 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위법성의 판단과 인과관계의 판단이 엄밀히 구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참고문헌, 학교안전 공제회, 2011:16~19).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와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로 대별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등·하교 시, 학교일과가 시작되기 전, 수업시간, 휴식시간, 청소시간, 자율학습시간, 방과 후), 장소(실험실 등의 교실 내, 운동장 등의 교실 밖, 학교 울타리 밖의 교외), 피해 내용(신체적 피해, 명예훼손, 재산피해), 사고원인의 주체(사람, 시설), 사고 형태(학생과 교사간의, 학생간의, 학생 자신에 의한)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구현자, 2005:5).

먼저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교육활동의 관련성 정도에 따른 분류, 원인행위자별 분류, 장소에 의한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른 분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육과정으로서 편성된 것과 그 이외의 교육활동으로 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각 교과, 도덕, 특별활동 및 종합적인 학습시간에 의해서, 중학교 교육과정은 필수교재, 선택교재, 도덕, 특별활동 및 종합적인 학습시간에 의해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각 교과에 속하는 과목, 특별활동 및 종합적인 학습시간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정규교육 및 과외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정규교육 교과 가운데 사고로서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체육, 기술, 과학실험, 기술실습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특별활동에서는 학교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과외교육으로서의 부 활동은 학습지도요령으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부 활동 그 자체의 위험성은 원래부터 지도자의 지도부족, 과도한 학

생의 자주성의 존중, 승리지상주의 등 학교안전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으로서 통상 위치 지워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등·하교중의 사고가 있다(참고문헌, 학교안전공제회, 2011;19). 학교안전사고는 <표 II-1>과 같이 교육활동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정규수업시간, 특별활동, 휴식시간, 비정규 교육활동,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II-1>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분류

시간	내용
정규수업시간	일반교과수업 중의 사고 실험·실습 중의 사고 체육시간 중의 사고
특별활동	체육대회, 축제, 합창대회 등 교내 행사 중의 사고 현장학습, 소풍, 사생대회,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교외활동 중의 사고 체육대회, 예술대회 등 교외행사 출전 중의 사고 클럽활동, 학생자치활동 중의 사고
휴식시간	학교급식 중의 사고 청소활동 중의 사고 휴식시간 중의 사고
비정규 교육활동	보충수업, 자율학습 중의 사고 방과후 교육활동 중의 사고
기타	학교 일과 전후의 사고 등하교 중의 사고

자료출처:(박현근, 2007;5~6),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2) 원인행위자별 분류

학교안전사고는 자연의 이상적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인위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인간의 인위적 작용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을 보면, Liveware적 원인(인간의 태도·부주의·무관심·고의·과실 등), Hardware적 원인(물적·환경적 요인으로 학교시설물·교통시설·기계적 결함·기술적 낙후·교통시설 등), Software적 원인(관리시스템·처리방법 및 절차·각종 규정 및 제도) 등이 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은 크게 인적 원인, 물리적 원인, 환경적 원인으로 구분된다. 인적원인에 의한 분류는 친구와의 놀이 중 심한 장난과 싸움, 새로 온 학생이 있는 경우 새로운 활동 참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개인의 행동 및 심리적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 쉽게 흥분하거나 충동적인 행동, 규칙 무시 행동, 주의가 산만하고 신경질이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 당황하거나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재촉 받는 상황, 배고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고가 있다. 그리고 교사 및 종사자의 부주의 위험물 보관 소홀, 부주의한 학생 관찰, 학생 방관, 안전교육 부실 및 교사 자신의 경솔한 행동, 학생들에게 규칙을 잘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있다(참고문헌, 학교안전공제회, 2011;25).

학교안전사고는 <표 II-2>와 같이 원인행위자에 따라 학생 자신의 사고, 교원에 의한 사고, 다른 학생에 의한 사고, 학교시설·설비에 의한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표 II-2> 원인행위자별 분류

원인행위자	내용
학생자신에	학생의 고의에 의한 사고 : 자살, 자해사고

의한 분류	학생 자신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 자기실수, 부주의, 불가항력
교원에 의한 사고	체벌에 의한 사고 심리적 처벌에 의한 사고 직무상 소홀 등에 의한 사고
다른 학생에 의한 사고	폭행사 집단 따돌림에 의한 사고 우발적 접촉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학생간부의 학생지도 중 체벌 지도
학교시설·설비에 의한 사고	식중독 등에 의한 사고 제3자에 의한 사고 : 학교구성원 이외의 자에 의한 가해 사고

자료출처:(박현근, 2007;7),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3) 장소에 의한 분류

학교안전사고는 장소에 따라 학교 안의 사고와 학교 밖의 사고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학교 안의 사고는 교실 내의 사고와 교실 밖의 사고로 다음의 <표 II-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II-3> 장소에 의한 분류

장소		내용
학교 안	교실 내	교실, 실험실, 실습실, 시청각실, 음악실, 등
	교실 외	교정, 복도, 운동장, 체육관, 옥상, 수영장 등
학교 밖		등하교길, 체험학습장 등

자료출처:(박현근, 2007;8),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2. 학교안전교육의 현황

안전 교육이란 학생 스스로가 외부의 재해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갖추게 하기 위해 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다. 또한 안전행동에 기여하는 습관, 기능, 태도 및 지식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교육이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육성하는 것이다(남상길, 2004:16).

김민아(2000:9)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의 실태나 원인을 이해하고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여 이를 예방함은 물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적절한 대응능력을 키워야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안전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적 의의를 살펴본다면 안전교육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실천교육 분야이며 행동의 교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에 관한 규칙을 이론적으로 이해시켜 암기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천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안전교육의 의의가 올바르게 잘 이해되었다면 올바르게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안전교육의 교육적 의의는 유년기에서부터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건전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자기와 타인의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인을 육성시켜 나가는 데 있다.

안전교육은 궁극적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태도와 위험 사태에서도 적절한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안전교육은 안전한 행동이 습관화 되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은 명랑하고 즐거운 삶의 기본 요건이며, 인간존중 개념의 첫걸음이다. 이러한 삶의 기본이 되는 안전이 유지되게 하려면 초등학교에서 부터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져 안전생활이 습관화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교육의 성과는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전 영역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생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안전의 당위성을 느끼도록 체험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필요한 습관과 태도를 익혀야 하며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생활지도의 전 영역에 걸쳐 유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참고자료, 태백장성초등학교, 2016:3).

외국의 안전교육 사례를 보면 단순히 사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습관 및 건강의 증진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겪으면서 주민들에 대한 재난대처교육과 훈련 등이 국가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잘 정비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방재사' 교육이다. 일본 방재사 기구가 인정한 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방재사 숫자는 150만 여명에 이른다. 방재사는 평상시 지역과 기업 단체에 방재의식을 심어주고 구조·구급지식 등을 교육하며 재난 시에는 피난유도와 구조, 구급, 피난장소의 관리 등을 맡는다(참고자료, 태백장성초등학교, 2016:5).

독일에서는 각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며 주로 교통안전 교육으로 되어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초등교육단계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필수과목으로, 단계적으로 연령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해 지도되고 있다(김민아, 2000:9).

영국에서는 국민보건정책을 1992년부터 사고나 상해로 인한 장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2005년까지 15세에서 24세 인구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25%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는 1990년 인구 10만 명당 23.2명에서 17.4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등학교의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관련 정보보급의 개선을 내세우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1992).

미국의 경우는 초등학생에서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의 주된 목표는 장애자들이 특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사회일원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연방보건성은 건강증진정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호차원에서 상해예방을 목적으로 2000년까지 도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 속에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학교안전교육을 포함하게 하였다(Develop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1).

외국의 안전교육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할 특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획일적인 안전교육보다는 학교와 지역 특색에 맞는 안전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 중남부 지방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지진이 많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지진을 대비한 안전교육에 더 집중한다. 이렇듯 연방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안전교육 매뉴얼보다는 지역과 단위학교에 맞는 안전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최근 들어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응급 상황 발생 시 사이렌 이외에도 문자와 이메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황을 통보해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 조사 결과, 이러한 정보통신을 이용한 자동 공지 및 통보 시스템을 도입한 학교가 전체 학교의 63%이며 그 수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학생의 대다수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만큼 학생 개개인에게 학교 안전과 관련한 상황을 빠르게 전

파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도 전파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참고자료, 태백장성초등학교, 2016;5).

교육부(2016)는 학교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시설과 활동 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은 어릴 때부터 안전 의식과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교원을 안전교육에 관한 전문가로 육성하는 동시에, 안전한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발달단계별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하여 표준안을 토대로 안전 교과 및 단원을 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원 양성 안전교육 강화 및 응급처치 등의 실습으로 유·초·중(체육), 보건 교과 등 직접적인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 강화 또는 과목을 신설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하고, 교사자격 취득 검정 기준 등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임용·승진 시 응급구조능력을 평가하며, 교원(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신설 예정인 (가칭) ‘학교안전관리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임용고사 및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구급·재난 관련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면접 등을 실시하여 자격을 부여(국가공인)하는 내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임용고사도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중등 체육교사 선발 시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 종목을 필수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교원 연수 시 모든 교원 대상으로 15시간 안전연수를 실시하며, 신규교원 및 정교사 자격연수,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에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상별로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단위에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매학기 학교안전매뉴얼대로 교

육을 시행하도록 했다(교육부, 2016).

교육부는 ‘국민안전처’와 범정부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안전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교육청 등에도 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학교안전법」으로 안전법령을 일원화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였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학생 발달단계(유아~고교)에 맞게 체험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초등에서는 생활안전, 폭력·신변 안전 영역을, 고등학교에서는 실습 시 직업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표준안이 마련됐다.

안전교육 표준안은 그간 학교(유·초·중·고) 안전교육이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져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등 4개 교과, 중등 6개 교과, 고등 5개 교과, 유치원 2개 영역에서 교육을 한다. 안전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를 위촉하여 유아에서 고교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 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이루어졌으며, 25개의 중분류, 52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학교 급(유·초·중·고)에 따른 <표 II-5>와 같이 표준안 내용 체계도 및 교사의 수업 활용을 돕기 위해 수업 지도안도 제공되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학교에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화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학생들의 참여·체험 형 안전교육 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 51개의 안전교육 시범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2016).

<표 II-4> 학교안전 7대 표준안(요약)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시설안전
		제품안전
		실험실습안전
	신체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교통안전	보행자안전	교통 표지판구별하기
		길을 건너는 방법
		보행안전
	자전거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안전한 자전거 관리
	오토바이안전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 사항
	자동차 안전	자동차사고의 원인
		자동차사고 예방법
	대중교통안전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
폭력 및 신변안전	학교폭력	학교폭력
		언어/사이버 폭력
		물리적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성매매 예방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방법
	자살	자살예방 및 대처방법
	가정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약물 · 사이버 중독	약물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흡연 폐해 및 예방
		음주폐해 및 예방
		고카페인 식품 폐해 및 예방
	사이버중독	인터넷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재난안전	화재	화재발생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사회재난	각종 테러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자연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시 대처요령
		지진·대설·한파·낙뢰 발생 시 대처요령
직업안전	직업안전의식	직업안전 의식의 중요성
		직업안전 문화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직업병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 관리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염좌, 골절, 화상 등
7개 영역	25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자료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실태

이정준의 연구에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을 분석해보면 16%만이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김종택(1997)의 연구에서는 77.4%가 곤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정준의 연구에서는 농·어촌에 위치한 학교가

많아서 도시에 위치한 학교보다 교원과 학부형간의 유대나 상호 이해의 폭이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작은 사고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문제를 삼지 않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의 경험횟수와 교권침해 경험의 유·무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교사가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의 의무를 다 하였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원의 68.7%가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9%는 책임이 없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97.7%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을 때는 문책이나 피해의 보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교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는 51.3%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18%가 문책을, 25.3%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43.3%가 문책이나 책임보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교권침해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교원의 65.6%가 도의적인 책임만 있고, 27.4%는 책임 없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91%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는 문책이나 피해의 보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김종택(1997)의 연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서도 비슷한 응답을 보여 교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원의 안전사고 경험 횟수와 교권침해 경험의 유·무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태도가 다른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방과 후 시간, 휴식시간, 등·하교시간, 학교 행사 등이 높게 나타났고, 교권 침해가 있는 교원은 학교행사, 방과 후 시간, 휴식시간 순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으로서는 학생 자신의 주의력 부족이나 학교시설 설비의 결함에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안전생활지도 부족이나 교사 체벌의 과도함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안전사고로 인한 교사의 피해 정도에서는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인사 상 불이익이나 신체적 폭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권침해 경험이 있는 교원이 없는 교원보다 정신적인 피해는 높게, 금전적 피해는 적고, 신체적이나 인사 상 불이익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라는 질문에는 학교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교원 보험제도 운영, 안전공제회에서 보험 업무 추가 실시, 교육청에 보험담당 부서의 설치 등은 비슷한 응답을 보인 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보험 처리는 비교적 낮은 응답을 보였다.

교원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면 누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학교의 부담이 합리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사고를 1- 2회 경험한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또한 피해 학생도 적절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이정춘, 1999:47~50)

교육활동은 그 과정에 항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교사의 주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과실의 경우에까지 교사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 교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학교 설립자에 부과된 배상의 경우도 교육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교원에 대한 보호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교권침해사례조사연구」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더러는 학교 측, 학부형 측, 교사 간의 화해 합의에 의해 해결된 경우도 있고, 사고의 현안에 따라서는 법정 투쟁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 관련된 교사와 학교의 관리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으며, 과중한 배상

액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사나 학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사고 당시의 지도교사는 이러한 정신적·물질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교직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그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 대하여 심한 갈등을 겪게 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이 있는 교과 활동 및 행사를 기피하거나 수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된다.

이런 경우 관리자는 자연히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내세워 학교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학교안전사고는 피해자가 신체적 활동이 활발하고 정신적 판단력은 미숙한 미성년자라는 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사고는 미성년자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소수 교사의 관리 하에 집단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까닭으로, 사고 발생 시 교사는 불이익을 당하고 교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교권을 침해당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권위임론(親權委任論)이라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의식에 의해 교육관계자들이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해 법적으로 규명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둘째, 교사들의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도 있다.

셋째, 교육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성향이 학교안전사고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일반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까닭으로 사고 당사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최선의 방책으로 보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결국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사가 전담한다는 불합리한 관행을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학교 안전사고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예방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는데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침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전반에 걸쳐 건전한 법질서를 구축하는 데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각 교육 주체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그 영역을 달리하는 만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교장이나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들의 의무가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교사는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교원의 생활이 안정되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적절한 처우와 신분보장이 될 때 교육의 효과성은 높아지고, 국가의 장래는 희망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사의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는 물론 UN에서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UN은 1965년 ILO와 UNESCO 공동회의에 의한 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 제69항에 ‘교원은 학생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학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교권침해사례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재향(2002)은 최근 몇 년간의 학교안전사고 판례를 토대로 학교안전사고의 현황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관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법적 원리를 제시하고 교사의 책임한계를 고찰. 분석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게 하여 학생과 교사들을 보호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교권침해를 줄이려는 연구를 하였다.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의해 학교 측의 영조물 관리 소홀에서 오는 사고와 교사의 지도하에서 오는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서는 교육활동 중의 사고가 있는데 체육 시간이나 특별활동을 포함한 교과수업 중의 사고, 외부체험 활동이나 체육대회 등 학교행사 중의 사고, 급식시간 중의 사고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위의 분류에서 의한 책임소재에 의한 분류 및 사고 형태에 의한 분류는 학교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학교의 교육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학교설립자·경영자 또는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학교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파악하는 경우, 이는 다시 학생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물적 설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기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직원의 능동적인 가해행위에 기한 사고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시간에 따른 분류와 장소에 의한 분류는 불법행위 주체에게 요구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노정해, 2015;4~5).

4. 선행연구 고찰

가.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분석

‘학교안전사고 실태와 분석’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여러 편이 있다. 그 중 교사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연구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차이, 학교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관련 연구, 한국과 일본의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요인분석을 한 연구 등이 있다.

이정춘(1999;47,52)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원 간에 학교안전사고의 경험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43%가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교사 중 81.7%가 경험하였다는 김종택(1997)의 연구나 울산광역시에 근무하는 교사 중 79.31%가 경험하였다는 강호중

(1998)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태안군과 서산시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 학교가 많으며, 학생이나 교사가 작은 사고에 대하여는 안전사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홍정순(2006;58~59)은 학교생활 중 학교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으로 등하교 및 기타 시간을 들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의 피해는 정신적 부분에서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학교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생 자신의 주의 부족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런데 학부모의 경우는 학교에서 안전생활지도 부족을 학교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해 사고 발생 시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등하교 및 기타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교육 행정가는 등하교 시 통학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사의 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안전생활지도를, 학부모는 가정 내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 측과 학부모 측이 함께 하는 만남의 기회를 통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간의 유대감을 쌓아가는 것도 분쟁의 여지를 좁혀 나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김지영(2009;71~75)은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안전교육 실태 비교”에서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한국교사는 학교에 안전전문교사를 배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일본교사는 안전사고 사례를 교사·학생에게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동안 교육청별로 학교안전 사고 및 응급처치법 등이 실린 ‘안전사고 매뉴얼’ 자료들이 만들어져 각 학교에

배부가 되었지만 매뉴얼의 대부분이 책자로 만들어져서 자료집을 활용하여 안전지도를 하거나 사고 사례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선생님은 많지 않다. 따라서 매뉴얼 자료를 만들 때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등으로 제작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현기(2014:79~84)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안전사고 대응과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유형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학교생활 중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살펴보니 학년이 올라 갈수록 신체적 활동이 활발하여 사고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체적 성장이 빠르고, 신체적 활동인 놀이를 좋아하는 시기지만 상대적으로 주의력과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의 안전사고는 교사의 영향력이 배제된 휴식시간 중에 본인의 부주의 또는 친구들과의 장난 등으로 인하여 많이 발생하므로 평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생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둔 안전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 내 이동 중 시설물에 의한 사고보다는 학생들의 장난이나 싸움 등 부주의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교실 내 모서리 부분에 부딪친 경우와 화장실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의한 안전도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시설 및 기구의 노후상태와 학교안전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안전한 학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 인증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상의 학교안전사고 실태와 분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사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연구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고 경험 차이가 크다. 둘째,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으로 교사들은 등하교 및 기타 시간을 들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사는 학교에 안전전문교사를 배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일본교사는 안전사고 사례를 교사·학생에게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넷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요인분석을 해보면 안전사고는 교사의 영향력이 배제된 휴식시간 중에 본인의 부주의 또는 친구 간 장난 등으로 인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 학교안전교육의 실태와 분석

“학교안전교육 실태와 분석 연구”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여러 편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등이 있다.

김지영(2009;71~75)은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안전교육 실태 비교’에서 한국과 일본 교사 모두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국교사는 초등학생 때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교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교사는 가정에서 부모가, 일본교사는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국교사는 안전교육에 관한 연수를 받은 적은 없으나 연수 기회가 주어질 경우 꼭 참가하겠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일본교사는 안전교육에 관한 연수를 5회 이상 받았으나 상황에 따라 참가하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근무 학교의 안전교육 현황은 한국교사는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위원회는 조직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일본교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고 아이들도 안전교육사항을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안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학교안전위원회에 관한 조사에서는 한국교사가 일본교사보다 ‘학교안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와 ‘잘 모른다’의 응답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녹색 어머니와 명예교사, 지역사회자원인사, 교사로 구성된 학교안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모여 학교 안전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교사들이 안전교육 계획에 맞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소집되어 연간 계획 및 학교안전 사항들에 관한 협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다고 하였다.

한국교사는 교통안전 교육을 1학기에 1회, 대피훈련 교육을 1학기에 1회, 생활지도는 하루에 여러 번 실시한다고 하였고 일본교사는 교통안전 교육을 년 1회, 대피훈련은 월 1회, 생활지도는 일주일에 1-2회 실시한다고 하였다. 안전교육을 지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한국교사는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한 반면에, 일본교사는 다른 교과 지도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교사는 교실 및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 통학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응답했고 일본교사는 학교에 화재 예방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사는 안전교육을 위한 학교의 행정적 지원이 적극적인 편이며,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본교사는 교사 연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박재희(2013:42~66)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초등학교 안전교육 담당교사를 분석한 결과 담임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6.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체육교사, 보건교사, 외부강사 및 기타로 나타났으며 과학교사는 3.41%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교사들은 안전교육을 담임교사가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시간을 조사해 보니 창의체험 재량활동 시간이 전체의 35.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체육시간과 조회종례, 일반 수업시간, 안전관계 행사, 휴식 및 기타 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교사들은 안전교육을 창의체험 재량활동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실시한 안전교육 횟수를 조사해 보면 21회 이상이 전체의 31.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5회, 6-10회, 11-20회, 1-2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사들은 안전교육을 한 학기에 21회 이상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1회 안전교육의 평균 시간을 조사해 보니 전체적으로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분미만, 1-2시간 순으로 나타났고, 3시간 이상은 2%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교사들은 안전교육을 1회에 1시간 미만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방법을 조사해 보니 교사들은 대부분 시청각매체를 이용하여 안전교육을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교육 평가 방법을 조사해 보니 평가를 안 함 및 기타의 경우가 66.35%로 가장 많았고 이론 및 실기를 병행하는 경우가 17.95%, 이론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9.62%, 실기로 평가하는 경우가 6.0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교사들 대부분은 안전교육 후 평가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안전교육 비중에 대한 평가를

조사해 보니 교직 경력별로 보면 10년 미만 경력의 교사의 경우 3.31%,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의 경우 3.54%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초등 교육과정에서의 안전교육 비중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자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 다른 주지과목으로 인하여 수업시수가 부족하여서가 4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재 프로그램 부족이, 여러 과목에 분산되어 있어 학문적인 일관성이 부족하여서가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부족이 5.8%, 교사관심 부족이 3.5%, 학생 학부모관심 부족이 3.2%로 나타났고, 기타 이유는 2%미만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큰 교육목적은 무엇인지 조사해 보니 안전생활습관 형성이 81.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안전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 습득이, 사고 시 대처 능력이, 생명 존중 태도육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의 일반적 특성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를 통해 보면 교사들 대부분은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 생활의 습관을 형성하여 평상시 안전행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에게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계획안 수립과 실행 방법을 조사해 보니 상황에 맞게 실행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9.31%로 과반수가 넘었고, 다음은 일일교육 계획안에 기초하여 실행한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실시한다,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행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교사들 대부분은 안전교육 계획안 수립과 실행방법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 하기보다는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의 준비 정도와 활용 정도를 조사해보니 담임교사 일수록 안전교육 지도서 준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직 경력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평균 3.04%, 20년 이상이 평균 3.48% 정도로 안전교육 지도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안

전교육 지도서 준비 정도에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교사들에게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의 정도에 대해 조사해 보니 평균이 4.57로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중간 정도로 매우 높게 나온 편이지만 교사의 일반적 특성별로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보면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에게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바람직한 운영형태에 대해 조사해보니 체험 재량 활동이 평균 50%, 수시로가 평균 37.5%로 나타나 두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은 독립교육형태가 평균 5.8%, 방과 후 활동과 일반 수업 및 기타가 각각 2.2%, 학교 외 개인학업이 1.3%, 동아리 활동이 1%로 나타났다. 교사의 일반적 특성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보면 교사들 대부분이 체험재량활동 시간이나 수시로 안전교육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학교안전교육 실태와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 교사 모두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국교사는 초등학생 때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교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또 한국교사는 가정에서 부모가, 일본교사는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둘째,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방법은 교사의 경우 상황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고 학생의 경우는 시청각 매체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방법은 대부분의 교사가 태도 등의 관찰 평가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과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과 보상에 관한 연구”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여러 편이 있다. 교사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연구, 한국과 일본교사의 비교 연구,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범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

고영택(1991)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안전사고 원인은 주로 물적, 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했다. 학생간의 사고, 교수·학습과 관련된 사고, 학교시설물로 인한 사고, 교외학습 활동 사고였던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미성년자의 보호, 감독자로서 교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교사의 체벌을 교육현장에서 필요악으로 보는데 부모들은 어느 정도의 체벌을 하더라도 교육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향(2002:87~89)은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책임한계”에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주체의 법적 책임으로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대리 감독자로서 감독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교사의 선임이나 사무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사용자 배상책임을 지며, 학교시설에 대한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일반불법행위로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의 책임 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및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그 기준으로 적용된다. 여기서 교사의 과실에 대해 면책될 수 있는 방어기제로는 위험의 인수, 기여 과실, 비교과실, 정부면책의 원리, 불가항력 등을 들 수 있다.

시간대별로 교사의 행동지침과 책임한계를 살펴보면 학교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교사에게 묻지 않는

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특정목적이 있어 학생들을 집합시켰을 경우나 학교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알고 있을 경우는 교사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 외의 통상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교사의 책임은 면제된다. 일반교과시간에는, 실험·실습 등을 하는 경우엔 학생들이 실험·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지켜야 할 규칙을 주지시키고 엄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대개 사고의 원인은 담당교사의 과실과 학생 본인의 과실로 대별되는데, 담당교사의 과실인 경우, 실험 진행 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지도가 있고 난 후 수업이 진행되는 때에도 학생의 연령, 능력, 성향, 지식, 경험 등을 고려하여 기여과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체육시간의 경우, 교육 지도상의 의무는 특정 운동종목이 개개 학생의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살피고, 짝을 짓거나 팀을 이루는 경우에도 양편의 학생이 신체적 조건과 숙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이 연습하는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의 여부, 운동종목의 특성과 당시 기상상태를 고려하였는가의 여부, 선정 운동종목이 표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인가의 여부, 충분한 교육지도를 이행하였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할 의무와 학부모에게 사고의 경위를 통고해야 하며, 또한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학생이 입은 상해에 대한 의료처치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교사가 아닌 부모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교사는 권한이 없다.

야외 수련활동, 체험활동과 같은 현장학습 경우 교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는 적절한 장소의 선정여부, 사전답사 실시의 여부, 실시 기간 동안의 기상상태의 고려여부, 인솔한 학생 수가 통제 가능한 범위였는가의 여부, 해당학생의 신체·정신적 발달 단계에 적합한 것이었는가의 여부 등이 판결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청소시간의 경우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

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중의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감독자인 교장,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본다. 단 학교교육 및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을 묻게 된다. 통상 발생하기 쉬운 예측 가능한 사고란 학교 급별로 또는 학생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고'란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여건과 미성숙한 학생들의 행동성향 등을 이해하고 있는 교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학교일과 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대리감독자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대리감독자의 보호감독의무가 인정되며 연령이 어릴수록 교사의 면밀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가 요구되는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생의 분별능력을 인정하여 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지 않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구현자(2005;74)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고현장별로는 휴식시간, 사고 병명별로는 팔 부상, 보상금액별로는 20만원 이하의 발생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안전사고 경험과 처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서는 사고 발생 시 처리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교사들은 학생 친권자의 대리 감독자로서 주의의무 이행과 학생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 활동 시간외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학부모, 담임교사, 학부모가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적 처벌로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경과실의 경우에는 학교 측이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과 법적 판례와는 다른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정춘(1999;51~52)의 연구에서는 교원들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주의의 의무를 다 하였으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원의 97.7%가 문책

이나 피해의 보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사의 책임은 행정적, 도덕적 책임은 묻되 보상은 공제회나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어 국가배상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교원들의 인식은 일반 상규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현행법과 법적 판례와는 차이를 갖고 있고 관련 법규의 이해와 사고처리의 요령을 익히고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판례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나 학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 학부모는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자나 학부모가 스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교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상호간에 불신과 반목을 낳게 되어 스승과 제자로서의 끈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험제도의 다양화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보상대상도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을 포함시켜야 하며, 학교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활동 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영(2009;43,74~75)은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안전교육 실태 비교”에서 한국교사가 일본교사보다 수업시간 중 안전사고 예방교육 후 학생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어야 인식하였고, 일본교사는 ‘교사’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해 국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그동안 교사에게 상당한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안전사고는 아직까지 교사에게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교사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는 등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정도에 대

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의 교원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최기영(2014:101)의 “학교사고 발생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에서 교육 활동 중에는 항상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인간이 주의 기울일 수 있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원이 모든 학생들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행동이 충동적인 경향이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경과실을 범했다 하더라도 교육활동에 지장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경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교외 현장체험학습, 체육수업, 과학실험수업 등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다소 소극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연구를 내놓았다.

그리고 교원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재하다 보니, 사고의 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증대되고 본래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 문제다. 학교 사고의 발생시,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법이 없는 관계로 민법, 형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등의 법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학교사고에 대한 구체적 법률도 없고 다양한 판례 속의 유사한 사고결과에 대해서도 교원의 보호·감독 의무와 예측 가능성에 대하여 상반된 판결이 제시되기도 한다.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판례를 수집하고 그 내부에서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였다.

박세철(2015:16)은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에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내 자녀만큼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시키겠다는 부모들의 욕구로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다양성을 요구하는 교육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장체험,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교육 기자재 및 외부시설의 사용기회 증대와 함께 학생들의 개성이 강해지는 추세에 더불어 학교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해 수반되는 책임문제는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특별활동, 수련활동, 체육활동 등이 단편적이며 일회용 교육으로 변질됨으로써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국가배상청구권에 기초하고 민법과 국가배상법 등에서 실제적인 배상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학교안전사고의 특성상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불법행위의 여부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 배상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피해구제 과정에서 갈등과 그 후유증이 남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사정을 감안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은 가해 학생(보호자)어느 한 개인이나 학교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교육주체, 책임한계, 책임소재, 정규 활동시간 외 등 대체로 교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경과실을 범했다 하더라도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중과실의 경우에도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교외 현장체험학습, 체육수업, 과학실험수업 등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다소 소극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발생하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과 보상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사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연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미성년자의 보호, 감독자로서 교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연구가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교사의 비교 연구에서는 한국교사가 일본교사보다 수업시간 중 안

전사고 예방교육 후 학생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일본교사는 ‘교사’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그동안 교사에게 상당한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내 자녀만큼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시키겠다는 부모들의 욕구로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책임 문제로 학습이 위축될 수 있어 범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라. 폭력·신변 안전사고의 실태와 분석

“학교폭력·신변 안전사고의 실태와 분석 연구”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여러 편이 있다. 학교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인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학교폭력예방은 학교에서 중심에 서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

최은(2016;10~11)은 “학교안전 행정법제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교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학교폭력이며 학생들 간의 집단따돌림과 직·간접적인 폭행에 의하여 학업에 전념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만4천명(0.9%)으로, 전년 동차 대비 1만5천명(0.3%)감소하였고 학교 급별 피해응답자는 초등학교 1만9천명(1.4%), 중학교 1만명(0.7%), 고등학교 5천명(0.5%)으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줄어든 중학교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가해자 유형별로 보면 ‘동 학교 동 학년’이 7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동 학교 타 학년’이 7.8%, ‘타 학교 학생’ 3%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

력'(35.3%), '집단따돌림'(16.9%)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43.2%)과 '하교이후'(14.2%)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점심시간'(9.1%), '수업시간'(7.7%)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장소별로는 '교실 안'(48.2%), '복도'(10.3%)등 '학교 안'(75.5%)의 비중이 높았고, 학교 밖은 '사이버공간'(6.7%), '놀이터'(3.6%)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대책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폭력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후 국회의원이 올해 초 교육부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만 662건을 기록, 2013년 상반기보다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교육부 설명과 달리, 심의건수는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점차 질적으로 흉포화, 집단화 되고 있어 사회나 국가가 개입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636건에서 1,399건으로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93건에서 지난해 310건으로 무려 3.3배나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지난 3년 간 두 배 가량 늘었지만, 성폭력사건 횟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중학교였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일반청소년의 2.7%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4.7% 높은 7.4%가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는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81.4%는 이성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으며 성추행이 51.9%로 가장 많았고 59.1%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으며 신고율은 14.3%에 그치고 있다. 또한 부모들이 이를 인지하는 비율도 38.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

소년의 성폭력 피해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소라(2016:27)는 “학교폭력의 실태, 예방 방안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인식의 비교분석”에서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라는 이름으로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만 학교가 폭력이 자행되는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세 주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성장에 관여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이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에 직접 관여하며 사건을 중재하거나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배지연(2013:67)은 “학교 폭력 및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대한 교사·학생의 인식”에서 교사와 학생집단 모두 현재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으며, 교사에 비해 학생들이 보다 더 다양한 유형에서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유형에 대한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의 여러 장면에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의 다양한 교육을 계획하여 ‘집단 따돌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 하였다.

권정관(2012:99~100)은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은 학교나 시민단체, 경찰 등 소규모 집단에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예방활동과 감시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치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학교 내·외에서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 여건의 문제로 인해 최근에 이르러 학교폭력의 형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 제도는 미흡하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사랑의 매'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학생인권을 너무 강조한 결과라 생각된다. 교사의 학생지도를 위한 체벌을 폭력이라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찾아와 심지어 폭행까지 행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을 지도하려 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 속에서 피해 학생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희생되어 가고 있다 하였다.

최송우(2007;63)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 방안”에서 학교폭력은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의 중심에 서야 하며 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체벌보다는 칭찬과 사랑으로 학생지도에 임하여야 한다고 했다.

노연순(2014;67)은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청소년 문제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이제 학교폭력은 그 내용과 방법이 다양하고 매우 잔인하여 공포화에 이르렀고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제시한 학교폭력대책들이 일회성 대응과 처방에 머물러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학교폭력 대책들이 학교폭력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에만 연연한 채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육주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석 등 학교폭력 발생양상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차원에서의 해결방안으로는 학교는 성적위주의 교육관행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며, 교사의 자질과 훈련은 청소년 학교폭력에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므로 교사연수가 필요하며, 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체계적이 학교상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였다.

백동현(2007:69~71)은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며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교사의 학교폭력 예방연수를 확대·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 수행집단으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교사들은 피해학생이 발견되었을 시 도움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주된 정보의 출처가 동료교사들 간의 의견 교류에 근거하고 있었다. 또한 도움을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경우는 폭력서클에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개입방법을 알지 못해서 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도입하되,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훈련이 체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개입이 실천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가 피해·가해학생 친구의 신고나 상담에 의해서와 학생 당사자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피해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방관학생에 대한 개입도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집단은 가해자, 동조자, 방관자, 피해자 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집단으로 인식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관하는 학생들을 중재자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피해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대처에 대한 교육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용서하여 화해하는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소집단 구성의 피해학생을 위한 치료프로그램과 가해학생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대다수인 방관학생을 위해서는 학급개입을 통한 중재자 프로그램, 학교차원의 개입으로는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등의 다각적인 개입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교사의 민감성이 요구된다. 담임교사들은 각 반의 학생들 중에서 학교폭력을 당할 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잘 관찰하고, 학생들에게 쪽지조사를 통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현재 당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놓는 일이 중요하다. 피해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요인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소심한 성격일수록, 친구가 적고, 자기주장을 잘하지 못하거나, 이기적인 경우, 가정의 방임과 무관심, 친구 이외의 지지체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피해를 많이 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경미한 폭력을 당한 학생은 내재된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이며, 심각한 폭력을 당한 학생은 등교거부나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 학생의 경우에 ‘갑자기 아이가 달라졌다’는 식의 학생 개별에게 문제를 소급시키기 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학교폭력이나 기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는 민감성이 요구된다. 특히, 피해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교사의 지지로 인함이 컸음을 봤을 때 교사의 관심과 상담 및 조언이 피해학생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연구 하였다.

정은주(2013;72~73)의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은 초등학교시기로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피해자와 가해자 뿐 아니라 학교폭력 방관자까지 모두 학교폭력경험에 노출된 경우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의 정도는 크고 심각하다.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은 개인요인이나 가족요인에서 출발할 수 있으나 개인의 변화와 부모 양육태도의 변화 등 개별적인 접근과 변화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 학교폭력은 점점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없는 악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언어적인 폭력의 증가와 함께 신체적 폭력,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이 다양화 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미약하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개로 나누어진 관련 부처를 통합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학교폭력·신변 안전사고의 실태와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인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에서 교육부는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대책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폭력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교육부 설명과 달리, 심의 건수는 늘어났다는 연구와 성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초등학교 시기부터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다. 둘째,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사랑의 매’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학생인권을 너무 강조한 결과, 교사에 비해 학생들이 보다 더 다양한 유형에서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 셋째, 학교폭력예방은 학교에서 중심에 서야 한다는 연구와 범국민적 차원에서 예방활동과 감시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치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가 있다.

마. 약물·사이버 중독 안전사고의 실태 분석

“약물·사이버 중독 안전사고 실태와 분석 연구”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여러 편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과의존 요인별 분석연구,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분석의 연구, 초등학교 남아의 게임중독정도의 연구가 있다.

권미수(2015;28.87~91.105)은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살펴본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변동계수는 <표Ⅱ-5>와 같다. 만10~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과의존 요인별 분석이을 살펴보면 금단이 31.0%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내성(25.4%), 가상세계지향(23.0%), 일상생활 장애(22.3%),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장애요인 중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가 3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25.5%), ‘인터넷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20.9%),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상세계지향 요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가 23.9%로 높았고,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가 22.1%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단 요인 중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다’가 4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인터넷이 생각난다’가 34.7%,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가 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성 요인에서는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가 2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가 26.6%, ‘인터넷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한다’가 2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5> 성별·대상별 표본오차 및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변동계수

구분		인터넷 이용자수	표본수	과의존율 (%)	표준오차	변동계수 (%)	표본오 차(%)
전체		39,236,287	18,500	6.8	0.002	2.7	0.4
성별	남성	20,305,014	9,574	7.6	0.003	3.6	0.5
	여성	18,931,274	8,926	6.0	0.003	4.2	0.5
대상별	유아 (만3-9)	3,284,642	1,549	5.0	0.004	8.5	0.8
	청소년 (만10-19)	5,815,961	2,742	13.1	0.004	3.4	0.9
	성인 (만20-59)	30,135,684	14,209	5.8	0.002	4.0	0.5

자료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2015;143),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II-6>와 같이 청소년(31.6%), 성인(13.5%), 유·아동(1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31.6%(1,704천명)로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노출 되었으며, 전년 대비 2.4%p 증가하여 매년 상승 추세(18.4% -> 25.5% -> 29.2% -> 31.6%)이며, 성인 과의존위험군(13.5%)보다 약 2.3배, 유·아동 과의존위험군(12.4%)보다 약 2.6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스마트폰과 의존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다소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61.3%로 높게 나타났는데,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60.2%)의 인식 수준이 일반 사용자군(61.6%)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표 II-6> 성별·대상별 표본오차 및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변동계수

구분		스마트폰 이용자수	표본수	과의존율 (%)	표준오차	변동계수 (%)	표본오차 (%)
전체		35,721,084	16,688	16.2	0.003	1.8	0.6
성별	남성	18,488,373	8,637	16.0	0.004	2.5	0.8
	여성	17,232,711	8,051	16.5	0.004	2.5	0.8
대상별	유아 (만3-9)	1,021,666	477	12.4	0.009	7.6	1.8
	청소년 (만10-19)	5,401,347	2,523	31.6	0.006	2.0	1.2
	성인 (만20-59)	29,298,070	13,687	13.5	0.003	2.6	0.7

자료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2015;144),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김시연(2016;42~44)의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기간 및 이용 동기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분석”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청소년 중 전체의 64.1%로 과반이 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지 ‘3년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하루 총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면, 성별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스마트폰을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학교 급별 스마트폰 일일 사용시간 역시 성별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고위험군에 속한 비율은 모두 중학생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폰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기능은 남학생이 음악듣기, 인터넷, 채팅으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채팅’, ‘음악듣기’, ‘인터넷’ 이용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능의 차이는 없으나, 채팅의 사용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이버 상에서 여학생들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남학생에 비해 좀 더 중요

한 활동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은 ‘기능통합성’, 여학생은 ‘습관적으로’를 선택하여 사용 항목에 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여 모두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기의 장점 즉, 항상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이동편의성)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스마트폰을 타인과 관계를 맺는 활동(관계성)에 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4%)은 남학생(13.5%)에 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활동(게임이용성)이 주 사용목적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학교 급별 이용 사용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스마트폰의 인스턴트 메시지 기능(채팅, SNS, 문자 메시지)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의 모두가 ‘음악듣기’가 공통으로 스마트폰의 주된 활동이었다. 그리고 ‘게임’은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능이 아니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학교 급별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관계성(24.7%), 기능통합성(21.1%), 이동편의성(20.6%)의 순서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관계성과 이동 편의성(20.2%), 습관(12.6), 대학생은 이동편의성(18.4%), 관계성(16.6), 습관(15.7)의 순이다. 종합해 보면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있어서 학교 급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공통적 요인으로서는 이동의 편리성 및 관계성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늘어가면서 그에 따른 역기능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을 빼놓을 수 없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 더 쉽게 중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면 청소년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 연구와 대책은 시급하다고 하다고 하였다.

정지혜(2013:55)의 “초등학교 남아의 인터넷 폭력게임 사용시간과 게임중독정도가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아동의 게임중독정도는 공격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게임에 심

리적으로 집착하고 게임 시간을 통제하기 힘들거나 습관적으로 게임을 지속하게 되는 경향성이 높을수록 공격적 행동을 더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인터넷 폭력게임 사용시간은 공격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 통제력은 게임중독정도와 공격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게임중독정도는 직접적으로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 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이 게임사용으로 인해 초조,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게임에 의존하게 되며 통제력을 상실하여 습관적으로 게임을 지속하게 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일시적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자기 통제력은 낮은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아동의 공격적 행동은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강지숙(2016;45)은 “초등학생의 불안수준에 따른 인터넷 중독”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터넷 1일 사용 시간과 불안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생의 불안이 심하거나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터넷 중독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불안이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초등학생의 불안과 인터넷 이용 시간은 인터넷 중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약물·사이버 중독 안전사고 실태와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과의존 요인별 분석연구에서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내성, 가상세계 지향, 일상생활 장애 순으로 나타나는 연구가 있다. 둘째, 스마트 폰 중독과의 관계분석의 연구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 더 쉽게 중독에 취약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청소년에 대한 스마트 폰 중독 연구와 대책은 시급하다는 연구가 있다. 셋째, 초등학교 남아의 게임중독정도의 연구에서 아동의 게임중독정도는 공격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의 차이와 사고의 발생에 대해 분석한 경우가 있다. 둘째,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연구는 한국교사와 일본교사와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분석과 교사와 학생과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 경우가 있다. 셋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과 보상’에 관한 연구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동안 교사에게 상당한 책임이 부여되는 문제로 학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한 연구가 있다. 넷째, ‘학교폭력신변’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과 성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초등학교 시기부터 발생한다는 분석한 연구가 있다. 다섯째, ‘약물·사이버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시기에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의 시기에 더 쉽게 중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공격적인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의 연구가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 연구절차, 조사도구, 자료처리 등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부산광역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방과후 교사, 돌봄 교사 기간제 및 시간제 강사, 특기적성강사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종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연구자를 포함한 보조 연구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응답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질문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한 뒤,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대상자들은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질문지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전체 450부 중에서 미회수와 미기입 등 설문지 기입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 46부를 제외하고, 실제분석에는 총 404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대상자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40	9.9
	여자	364	90.1

연령	20대	39	9.7
	30대	98	24.3
	40대	161	39.9
	50대 이상	106	26.2
학력	전문대졸	31	7.7
	대졸(4년제)	279	68.8
	대학원졸	95	23.5
교육종사 직종	정규직(교사)	187	46.3
	비정규직 (방과후강사, 보육사)	217	53.7
근무연수	10년 미만	219	54.2
	11년~20년	105	26.0
	21년~30년	47	11.6
	31년 이상	33	8.2
계		404	100

2. 연구절차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연구를 한 것이며, 문제발견, 문헌고찰, 연구문제 가설, 연구 설계, 도구(설문지)선택 및 제작, 연구대상 선정, 조사, 결과 분석 통계 및 해석 등의 일정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 진행 기간

내용	연구기간
문제발견, 문헌고찰, 연구문제 가설, 연구 설계	2016.07 ~2016.10
도구(설문지)선택 및 제작	2016.11 ~ 2016.12
연구대상선정, 조사	2017.01 ~ 2017.03
결과 분석 통계 및 해석	2017.03 ~ 2017.04
연구결과 발표	2017. 05 ~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예비검사를 통하여 내용의 적합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그 신뢰도를 검증하여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교사 10명, 방과후강사·돌봄사(보육교사) 10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해석상 오류가 나올 확률이 큰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또한 설문에 응답할 교육종사자들이 혼동이 없고 통계처리도 가능하도록 설문지의 매 쪽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안전교육의 정의와 설문 시 주의할 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가. 조사도구의 구성 내용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연구대상자의 연구 대상자 특성 5문항, 학교안전 21문항, 생활안전 7문항, 교통안전 7문항, 폭력 및 신변안전 7문항, 약

물·사이버 중독 7문항, 재난안전 7문항, 직업안전 7문항, 응급처치 7문항으로 전체 7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설문지의 응답형태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응답내용은 “매우 그렇다” 1점, “대체로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을 부여하였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학생 안전교육)」과 선행연구 박재희(2013)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학교안전도 그리고 7개 영역을 포함한 총 75개의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영역에 따른 내용 및 문항 수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설문지 구성 내용 및 문항 수

영역	구성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종, 근무 연수, 안전사고경험	5
학교안전	학교안전도	21
생활안전	안전의 중요도, 안전수준, 위험한 장소	7
교통안전	교통신호, 안전벨트, 발생원인	7
폭력 및 신변안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지식, 집단 따돌림	7
약물·사이버 중독	약물로 인한 사고, 사이버중독, 사용법	7
재난안전	대처능력, 비상용품의 준비, 대피 유도	7
직업안전	산업안전의식수준, 산업안전교육, 산업재해	7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행동수칙, 자동세정기 사용법	7
전체		75

나. 조사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6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각 구성개념별로 문항 전체의 Cronbach's α 계수는 생활안전 분야 .709, 교통안전 분야 .764, 폭력 및 신변안전 .882, 약물·사이버 중독 .749, 재난안전 .836, 직업안전 .698, 응급처치 .894로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조사도구의 신뢰도

구 분	문항수	Cronbach's α
생활안전	6	.709
교통안전	6	.764
폭력 및 신변안전	7	.882
약물·사이버중독안전	7	.749
재난안전	7	.836
직업안전	6	.698
응급처치	6	.894

4. 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 수집할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종사자 직종에 따른 안전의식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학교안전도에 대한 교육종사 직종별 인식 차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교안전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IV-1~IV-21>과 같다.

가.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를 당한 경험 분석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를 당한 경험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를 당한 경험 분석 (%)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χ^2
교육종사 직종	정규직	46(24.6)	141(75.4)	187(100.0)	15.004***
	비정규직	22(10.1)	195(89.9)	217(100.0)	
전체		68(16.8)	336(83.2)	404(100.0)	

***p<.001

<표 IV-1>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를 당한 경험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5.004$,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다.

나.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주체 분석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주체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주체 분석 (%)

	체육 교사	보건 교사	과학 교사	담임 교사	외부 강사	기타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직 0(0.0)	2(1.1)	2(1.1)	175(93.6)	6(3.2)	2(1.1)	187(100.0)	128.509***
비정규 직	14(6.5)	41(18.9)	4(1.8)	87(40.1)	44(20.3)	27(12.4)	217(100.0)	
전체	14(3.5)	43(10.6)	6(1.5)	262(64.9)	50(12.4)	29(7.2)	404(100.0)	

***p<.001

<표 IV-2>와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주체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8.509$,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담임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외부강사”, “보건교사”, “과학교사”,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담임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외부강사”, “보건교사”, “기타”, “체육교사”, “과학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시간대 분석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시간대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시간대 분석 (%)

		체육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재량활동 시간	안전 관계 행사시	조회 또는 종례 시간	일반 수업 시간	휴식 시간	기타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 직	4(2.1)	62(33.2)	28(15.0)	39(20.9)	51(27.3)	1(0.5)	2(1.1)	187(100.0)	69.967***
	비정 규직	17(7.8)	42(19.4)	64(29.5)	41(18.9)	17(7.8)	2(0.9)	34(15.7)	217(100.0)	
전체		21(5.2)	104(25.7)	92(22.8)	80(19.8)	68(16.8)	3(0.7)	36(8.9)	404(100.0)	

***p<.001

<표 IV-3>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시간대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9.967$,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재량활동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반수업시간”, “조회 또는 종례시간”, “안전관계행사시”, “체육시간”, “기타”, “휴식시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안전관계행사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재량활동시간”, “조회 또는 종례시간”, “기타”, “체육교사”, “일반수업시간”, “휴식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 학생대상 안전교육 실시 한 학기 동안 횟수 분석

학생대상 안전교육 실시 한 학기 동안 횟수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학생대상 안전교육 실시 한 학기 동안 횟수 분석 (%)

	1-2회	3-5회	6-10회	11-20회	21회이상	기타	전체	χ^2
교육 정규직	16(8.6)	39(20.9)	33(17.6)	25(13.4)	56(29.96)	18(9.6)	187(100.0)	81.846***
종사 직종 비정규 직	78(35.9)	64(29.5)	35(16.1)	15(6.9)	9(4.1)	16(7.4)	217(100.0)	
전체	94(23.3)	103(25.5)	67(16.8)	40(9.9)	65(16.1)	34(8.4)	404(100.0)	

***p<.001

<표 IV-4>와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대상 안전교육 실시 한 학기 동안 횟수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81.846$,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21회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3-5회”, “6-10회”, “11-20회”, “기타”, “1-2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1-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3-5회”, “6-10회”, “기타”, “11-20회”, “21회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 학생대상 안전교육 1회 평균 시간 분석

학생대상 안전교육 1회 평균 시간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학생대상 안전교육 1회 평균 시간 분석 (%)

	30분 미만	1시간 미만	1-2시간	3-4시간	5-6시간	기타	전체	χ^2
교육 정규직	80(42.8)	93(49.7)	9(4.8)	1(0.5)	2(1.1)	2(1.1)	187(100.0)	11.664*
종사 직종 비정규 직	93(42.9)	87(40.1)	25(11.5)	2(0.9)	1(0.5)	9(4.1)	217(100.0)	
전체	173(42.8)	180(44.6)	34(8.4)	3(0.7)	3(0.7)	11(2.7)	404(100.0)	

*p<.05

<표 IV-5>와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대상 안전교육 1회 평균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664$,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1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30분 미만”, “1-2시간”, “5-6시간”, “기타”, “3-4시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30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1시간 미만”, “1-2시간”, “기타”, “3-4시간”, “5-6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 학생안전교육 방법 분석

학생안전교육 방법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학생안전교육 방법 분석 (%)

	강의 형식	시청각 매체활용	토론 형식	체험활동 형식	방문 견학	기타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직 36(19.3)	123(65.8)	2(1.1)	24(12.8)	2(1.1)	0(0.0)	187(100.0)	26.720***
	비정규직 50(23.0)	102(47.0)	13(6.0)	38(17.5)	1(0.5)	13(6.0)	217(100.0)	
전체	86(21.3)	225(55.7)	15(3.7)	62(15.3)	3(0.7)	13(3.2)	404(100.0)	

*** $p<.001$

<표 IV-6>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안전교육 방법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6.720$,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시청각 매체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강의형식”, “체험활동형식”, “토론형식”, “방문견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시청각 매체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강의형식”, “체험활동형식”, “토론형식”, “기타”, “방문견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 학생들의 안전교육 평가 방법 분석

학생들의 안전교육 평가 방법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학생들의 안전교육 평가 방법 분석 (%)

	이론 평가	실기 평가	이론 및 실기평가	평가하지 않음	기타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직 비정규 직	16(8.6)	19(10.2)	31(16.6)	113(60.4)	8(4.3)	187(100.0)
		24(11.1)	17(7.8)	90(41.5)	57(26.3)	29(13.4)	217(100.0)
전체		40(9.9)	36(8.9)	121(30.0)	170(42.1)	37(9.2)	404(100.0)

***p<.001

<표 IV-7>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교육 평가 방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8.946$,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평가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이론 및 실기평가”, “실기평가”, “이론평가”,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이론 및 실기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평가하지 않음”, “기타”, “이론평가”, “실기평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 비중 분석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 비중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 비중 분석 (%)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충분하지 않다	매우 충분하지 않다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직 48(25.7)	84(44.9)	47(25.1)	7(3.7)	1(0.5)	187(100.0)	46.215***
	비정규 직 22(10.1)	68(31.3)	79(36.4)	38(17.5)	10(4.6)	217(100.0)	
전체	70(17.3)	152(37.6)	126(31.2)	45(11.1)	11(2.7)	404(100.0)	

***p<.001

<표 IV-8>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 비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6.215$,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충분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충분하다”, “보통이다”, “충분하지 않다”, “매우 충분하지 않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매우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지 않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 학생들의 안전교육 부족 원인 분석

학생들의 안전교육 부족 원인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학생들의 안전교육 부족 원인 분석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 직	4 (2.1)	19 (10.2)	4 (2.1)	66 (35.3)	18 (9.6)	3 (1.6)	24 (12.8)	30 (16.0)	19 (10.2)	187(100.0)	36.633***
	비정 규직	20 (9.2)	32 (14.7)	12 (5.5)	54 (24.9)	18 (8.3)	8 (3.7)	47 (21.7)	21 (9.7)	8 (2.3)	217(100.0)	
	전체	24 (5.9)	51 (12.6)	16 (4.0)	120 (29.7)	36 (8.9)	11 (2.7)	71 (17.6)	51 (12.6)	24 (5.9)	404(100.0)	

***p<.001

① 교사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② 안전교육을 위한 검증된 교재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③ 안전에 관한 교사의 지식이 부족해서, ④ 다른 주지 과목으로 인한 수업 시수가 부족해서, ⑤ 학교 예산과 지원이 부족해서, ⑥ 학생 및 학부모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⑦ 안전 교육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⑧ 여러 과목에 분산되어 있어 학문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⑨ 기타

<표 IV-9>와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교육 부족 원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36.633$,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다른 주지 과목으로 인한 수업 시수가 부족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여러 과목에 분산되어 있어 학문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안전 교육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안전교육을 위한 검증된 교재나 프로그램이 없어서”와 “기타”, “학교 예산과 지원이 부족해서”, “교사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와 “안전에 관한 교사의 지식이 부족해서”, “학생 및 학부모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다른 주지 과목으로 인한 수업 시수가 부족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안전 교육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안전교육을 위한 검증된 교재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여러 과목에 분산되어 있어 학문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교사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학교 예산과 지원이 부족해서”, “학생 및 학부모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기타”

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 분석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 분석 (%)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직	22(11.8)	132(70.6)	26(13.9)	7(3.7)	0(0.0)	187(100.0)
	비정규직	58(26.7)	97(44.7)	60(27.6)	1(0.5)	1(0.5)	217(100.0)
전체		80(19.8)	229(56.7)	86(21.3)	8(2.0)	1(0.2)	404(100.0)

***p<.001

① 안전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 습득, ② 학생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평소 안전 생활습관의 형성, ③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습득, ④ 자신과 남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육성, ⑤ 기타

<표 IV-10>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8.476$,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학생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평소 안전 생활습관의 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습득”, “안전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 습득”, “자신과 남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육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학생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평소 안전 생활습관의 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습득”, “안전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 습득”, “자신과 남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육성”,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카. 학생 대상 안전교육의 계획안 수립과 실행 분석

학생 대상 안전교육의 계획안 수립과 실행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학생 대상 안전교육의 계획안 수립과 실행 분석 (%)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교육종사 직종							
정규직	52(27.8)	49(26.2)	81(43.3)	5(2.7)	0(0.0)	187(100.0)	22.160***
비정규직	51(23.5)	68(31.3)	67(30.9)	21(9.7)	10(4.6)	217(100.0)	
전체	103(25.5)	117(29.0)	148(36.6)	26(6.4)	10(2.5)	404(100.0)	

***p<.001

① 안전교육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실시한다. ② 안전교육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지만 일일교육계획안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교육계획안을 작성하지 않고 일일교육계획안에도 기초하지 않지만 상황이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실시한다. ④ 안전교육계획안이 작성 되지 않고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만 실시됨 ⑤ 기타

<표 IV-11>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 대상 안전교육의 계획안 수립과 실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2.160$,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안전교육계획안을 작성하지 않고 일일교육계획안에도 기초하지 않지만 상황이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실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안전교육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실시한다.”, “안전교육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지만 일일교육계획안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안전교육계획안이 작성 되지 않고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만 실시됨”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안전교육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지만 일일교육계획안에 기초하여 실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안전교육계획안을 작성하지 않고 일

일교육계획안에도 기초하지 않지만 상황이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실시한다.”, “안전교육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실시한다.”, “안전교육계획안이 작성되지 않고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만 실시됨”,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 준비 현황 분석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 준비 현황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 준비 현황 분석 (%)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조금 준비되어 있다	보통 이다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 직	46(24.6)	37(19.8)	72(38.5)	31(16.6)	1(0.5)	187(100.0)	3.110
비정 규직	45(20.7)	50(23.0)	91(41.9)	28(12.9)	3(1.4)	217(100.0)	
전체	91(22.5)	87(21.5)	163(40.3)	59(14.6)	4(1.0)	404(100.0)	

<표 IV-12>와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 준비 현황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110$,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조금 준비되어 있다”,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조금 준비되어 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 활용도 현황 분석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 활용도 현황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 활용도 현황 분석 (%)

		매우 활용되고 있다	조금 활용되고 있다	보통이다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 직	45(24.1)	50(26.7)	65(34.8)	22(11.8)	5(2.7)	187(100.0)	9.276
	비정 규직	31(14.3)	62(28.6)	96(44.2)	26(12.0)	2(0.9)	217(100.0)	
전체		76(18.8)	112(27.7)	161(39.9)	48(11.9)	7(1.7)	404(100.0)	

<표 IV-13>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 활용도 현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276$,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조금 활용되고 있다.”, “매우 활용되고 있다.”,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 정도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 정도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 직	105(56.1)	61(32.6)	21(11.2)	0(0.0)	0(0.0)	187(100.0)	2.581
	비정 규직	134(61.8)	58(26.7)	24(11.1)	1(0.5)	0(0.0)	217(100.0)	
전체		239(59.2)	119(29.5)	45(11.1)	1(0.2)	0(0.0)	404(100.0)	

<표 IV-14>와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581$,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매우 필요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분석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분석 (%)

		정규수업 시간 중 독립과목 으로	창의적 방과 후 활동	체험 활동 및 재량 활동	동아 리 활동	학교 외에 개인적 으로 학업	일반수 업시간 중과목 명	수시 로	기타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 직	28 (15.0)	2 (1.1)	101 (54.0)	0 (0.0)	3 (1.6)	52 (27.8)	1 (0.5)	0 (0.0)	187 (100.0)	46.869***
	비정 규직	91	7	68	3	2	42	3	1	217	

규직	(41.9)	(3.2)	(31.3)	(1.4)	(0.9)	(19.4)	(1.4)	(0.5)	(100.0)
전체	119	9	169	3	5	94	4	1	404
	(29.5)	(2.2)	(41.8)	(0.7)	(1.2)	(23.3)	(1.0)	(0.2)	(100.0)

***p<.001

<표 IV-15>와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6.869$,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재량활동”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수시로”, “정규수업 시간 중 독립과목으로”, “학교 외에 개인적으로 학업”, “방과 후 활동”, “일반수업 시간 중 과목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정규수업 시간 중 독립과목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재량활동”, “수시로”, “방과 후 활동”, “동아리 활동”, “일반수업 시간 중 과목명”, “학교 외에 개인적으로 학업”,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주기 분석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주기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6>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주기 분석 (%)

		하루	일주일	한달	한학기	한 교육종사 직종별에 따른	기타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직	27(14.4)	78(41.7)	56(29.9)	16(8.6)	5(2.7)	5(2.7)	187(100.0)	32.190***
	비정규직	6(2.8)	67(30.9)	101(46.5)	26(12.0)	14(6.5)	3(1.4)	217(100.0)	
전체		33(8.2)	145(35.9)	157(38.9)	42(10.4)	19(4.7)	8(2.0)	404(100.0)	

***p<.001

<표 IV-16>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주기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2.190$,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일주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한달”, “하루”, “한 학기”, “한 교육종사 직종별에 따른”,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한 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주일”, “한 학기”, “하루”,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안전교육 실시횟수 분석

안전교육 실시횟수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 안전교육 실시횟수 분석 (%)

	1회	2회	3회	4회	5회	기타	전체	χ^2
교육종사 직종								
정규직	89(47.6)	54(28.9)	20(10.7)	6(3.2)	7(3.7)	11(5.9)	187(100.0)	4.658
비정규직	104(47.9)	59(27.2)	31(14.3)	9(4.1)	9(4.1)	5(2.3)	217(100.0)	
전체	193(47.8)	113(28.0)	51(12.6)	15(3.7)	16(4.0)	16(4.0)	404(100.0)	

<표 IV-17>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횟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658$,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1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2회”, “3회”, “기타”, “5회”, “4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1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2회”, “3회”, “4회”, “5회”,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 학생들이 받는 1회 안전교육 예상 평균 시간 분석

학생들이 받는 1회 안전교육 예상 평균 시간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 학생들이 받는 1회 안전교육 예상 평균 시간 분석 (%)

	30분 미만	1시간 미만	1-2시간	3-4시간	5-6시간	기타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 직	96(51.3)	84(44.9)	5(2.7)	0(0.0)	2(1.1)	0(0.0)	187(100.0)
	비정 규직	84(38.7)	112(51.6)	18(8.3)	1(0.5)	1(0.5)	1(0.5)	217(100.0)
전체		180(44.6)	196(48.5)	23(5.7)	1(0.2)	3(0.7)	1(0.2)	404(100.0)

*p<.05

<표 IV-18>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들이 받는 1회 안전교육 예상 평균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321$,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30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1시간 미만”, “1-2시간”, “5-6시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1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30분 미만”, “1-2시간”, “3-4시간”, “5-6시간”,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희망 주체 분석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희망 주체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희망 주체 (%)

		체육	보건	과학	담임	외부	기타	전체	χ^2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강사			
교육 종사 직종	정규 직	5(2.7)	6(3.2)	2(1.1)	124(66.3)	46(24.6)	4(2.1)	187(100.0)	42.051***
	비정 규직	7(3.2)	9(4.1)	4(1.8)	76(35.0)	117(53.9)	4(1.8)	217(100.0)	
전체		12(3.0)	15(3.7)	6(1.5)	200(49.5)	163(40.3)	8(2.0)	404(100.0)	

***p<.001

<표 IV-19>와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희망 주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2.051$,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담임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외부강사”,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과학교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외부강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담임교사”, “보건교사”, “체육교사”, “과학교사”,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분석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표 IV-20>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분석 (%)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 직	71(38.0)	38(20.3)	4(2.1)	2(1.1)	71(38.0)	1(0.5)	187(100.0)	3.049
	비정 규직	70(32.3)	49(22.6)	10(4.6)	3(1.4)	84(38.7)	1(0.5)	217(100.0)	
전체		141(34.9)	87(21.5)	14(35.5)	5(1.2)	155(38.4)	2(0.5)	404(100.0)	

① 방문견학을 통한 교육방법으로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진 한다. ②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진 한다. ③ 토론형식으로 안전교육

의 효과를 증진 한다. ④ 이론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학생의 안전지식을 높여 안전사고를 줄인다. ⑤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인다. ⑥ 기타

<표 IV-20>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049$,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방문견학을 통한 교육방법으로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진 한다.”,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진 한다.”, “토론형식으로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진 한다.”, “이론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학생의 안전지식을 높여 안전사고를 줄인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방문견학을 통한 교육방법으로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진 한다.”,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진 한다.”, “토론형식으로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진 한다.”, “이론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학생의 안전지식을 높여 안전사고를 줄인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샤. 안전교육 평가 적절성 분석

안전교육 평가 적절성 분석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안전교육 평가 적절성 분석 (%)

	이론 평가	실기 평가	이론평가 및 실기평가	보고서 검토	관찰 및 태도	기타	전체	χ^2
교육 종사 정규 직	5(2.7)	34(18.2)	40(21.4)	1(0.5)	105(56.1)	2(1.1)	187(100.0)	45.488***

직종	비정규직	3(1.4)	40(18.4)	106(48.6)	6(2.8)	62(28.6)	0(0.0)	217(100.0)
전체		8(2.0)	74(18.3)	146(36.1)	7(1.7)	167(41.3)	2(0.5)	404(100.0)

***p<.001

<표 IV-21>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안전교육 평가 적절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5.488$,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관찰 및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이론평가 및 실기평가”, “실기평가”, “이론평가”, “기타”, “보고서 검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이론평가 및 실기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관찰 및 태도”, “실기평가”, “보고서 검토”, “이론평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종사 직종별 인식 차이

가.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생활안전의 차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생활안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IV-22>와 같다.

<표 IV-22>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생활안전 차이

구분	M	SD	t-test
교육종사 직종	정규직 4.10	.30	3.376***
	비정규직 4.02	.15	

***p<.001

<표 IV-22>와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생활안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안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376$,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몇 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 본인의 안전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서는 정규직 4.33(.47), 비정규직 4.10(.30)으로 나타났으며, “가위, 목공도구, 청소용구는 안전하게 보관하며 사용방법을 숙지를 하고 사용합니까?”에서는 정규직 4.43(.49), 비정규직 4.23(.42)으로 나타났다.

“코드(선)를 잡아당기면 피복안의 구리선이 끊어져 화재와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74(.43), 비정규직 4.58(.49)으로 나타났으며,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고 사용하면 전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78(.41), 비정규직 4.62(.48)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장소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23>과 같다.

<표 IV-23>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장소 (%)

		가정 등 주거 공간	상가업소 유흥시설	놀이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학교· 직장사 업장	도로, 노상, 역, 정류소 등 이동 공간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 직	15(8.0)	16(8.6)	39(20.9)	8(4.3)	109(58.3)	187(100.0)	2.668
	비정 규직	12(5.5)	12(5.5)	48(22.1)	11(5.1)	134(61.8)	217(100.0)	
전체		27(6.7)	28(6.9)	87(21.5)	19(4.7)	243(60.1)	404(100.0)	

<표 IV-23>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장소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668$,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도로, 노상, 역, 정류소 등 이동 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상가업소 유흥시설”, “가정 등 주거 공간”, “학교·직장사업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교통안전의 차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교통안전 차이에 대한 t-검증의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표 IV-24>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교통안전의 차이

구분		M	SD	t-test
교육종사 직종	정규직	4.21	.41	4.343***
	비정규직	4.06	.24	

*** $p<.001$

<표 IV-24>와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교통안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통안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343$,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통규칙 및 신호를 잘 지킨다고 생각 하십니까?”에서는 정규직 4.68(.46), 비정규직 4.44(.49)으로 나타났으며, “차량 이용 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 하십니까?”에서는 정규직 4.90(.28), 비정규직 4.79(.40)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앞좌석 뒷좌석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며 아이들은 뒷좌석에 태웁니까?”에서는 정규직 4.55(.49), 비정규직 4.40(.49)으로 나타났으며, “비 오

는 날 밝은 색의 옷을 입으며 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지키십니까?”에서는 정규직 4.41(.49), 비정규직 4.18(.38)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75(.43), 비정규직 4.51(.50)으로 나타났으며, “자전거를 탈 때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이용합니까?”에서는 정규직 4.40(.49), 비정규직 4.17(.37)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표 IV-25> 우리 사회에서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 (%)

	운전 부주의	보행자 부주의	교통 혼잡	운전자,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	교통신호 체계 및 도로구조 의 잘못	전체	χ^2
교육 정규직	38(20.3)	2(1.1)	18(9.6)	119(63.6)	10(5.3)	187(100.0)	11.482*
종사 비정규 직종 직	36(16.6)	10(4.6)	9(4.1)	155(71.4)	7(3.2)	217(100.0)	
전체	74(18.3)	12(3.0)	27(6.7)	274(67.8)	17(4.2)	404(100.0)	

*p<.05

<표 IV-21>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우리 사회에서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11.482,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운전자,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운전 부주의”, “교통 혼잡”, “교통신호체계 및 도로구조의 잘못”, “보행자 부주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운전자,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운전 부주의”, “보행자 부주의”, “교통 혼잡”, “교통신호체계 및 도로구조의 잘못”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폭력 및 신변안전의 차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폭력 및 신변안전 차이에 대한 t-검증의 결과는 <표 IV-26>과 같다.

<표 IV-26>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폭력 및 신변안전의 차이

구분	M	SD	t-test
교육종사 직종	정규직 4.42	.49	8.482***
	비정규직 4.07	.26	

***p<.001

<표 IV-26>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폭력 및 신변안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폭력 및 신변안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482$,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82(.37), 비정규직 4.57(.49)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에 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58(.49), 비정규직 4.21(.40)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가해 학생을 상담할 수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55(.49), 비정규직 4.19(.39)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이 가해자, 피해자 외 목격하는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는가?”에서는 정규직 4.69(.46), 비정규직 4.30(.46)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79(.40), 비정규직 4.44(.49)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학교에 알리십니까?”에서는 정규직 4.73(.44), 비정규직 4.43(.49)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며 피·가해 학

부모에게 상담을 합니까?”에서는 정규직 4.79(.40), 비정규직 4.35(.47)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폭력 및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약물·사이버중독의 차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약물·사이버중독 차이에 대한 t-검증의 결과는 <표 IV-27>과 같다.

<표 IV-27>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약물·사이버중독의 차이

구분		M	SD	t-test
교육종사 직종	정규직	4.04	.21	2.661**
	비정규직	4.00	.06	

**p<.01

<표 IV-27>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약물·사이버중독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약물·사이버중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661$, $p<.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몇 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약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62(.48), 비정규직 4.29(.45)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모바일) 중독에 빠진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49(.50), 비정규직 4.13(.34)으로 나타났다. “담배·술·마약류가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가?”에서는 정규직 4.39(.48), 비정규직 4.15(.36)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내 흡연과 음주를 하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40(.49), 비정규직 4.04(.19)으로 나타났다. “약이나 화학약품을 잘 못 먹었을 경우, 대처 방법을 잘 알

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27(.44), 비정규직 4.06(.24)으로 나타났으며, “증상이 비슷하면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에서는 정규직 4.13(.34), 비정규직 4.00(.0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약물·사이버중독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재난안전의 차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재난안전 차이에 대한 t-검증의 결과는 <표 IV-28>과 같다.

<표 IV-28>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재난안전의 차이

구분		M	SD	t-test
교육종사 직종	정규직	4.05	.22	2.496*
	비정규직	4.00	.09	

*p<.05

<표 IV-28>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재난안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재난안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96,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몇 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 내 재난대비용 비상용품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15(.36), 비정규직 4.04(.21)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이 발생 했을 때 학생들에게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34(.47), 비정규직 4.09(.28)으로 나타났다. “대피 시 차를 타지 않으며 필수용품만 가지고 피난한다는 요령을 숙지하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37(.48), 비정규직 4.17(.37)으로 나타났으며, “지진대피 대처 방법 중 집안에 있을 때와 집 밖에 있을 때, 운전 중일 때 학교 안에 있을 때 각각 방법

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43(.49), 비정규직 4.17(.38)으로 나타났다. “지진이 나면 좁은 길이나 담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갑니까?”에서는 정규직 4.52(.50), 비정규직 4.28(.45)으로 나타났으며, “낙뢰가 발생하면 벽과 기둥에 기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52(.50), 비정규직 4.31(.46)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직업안전의 차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직업안전 차이에 대한 t-검증의 결과는 <표 IV-29>와 같다.

<표 IV-29>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직업안전의 차이

구분	M	SD	t-test
교육종사 직종 — 정규직	4.03	.19	2.239*
비정규직	4.00	.06	

*p<.05

<표 IV-29>와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직업안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직업안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39,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서는 정규직 4.08(.27), 비정규직 4.00(.09)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안전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는 정규직 4.07(.26), 비정규직 4.00(.09)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와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63(.48), 비정규직 4.37(.48)으로 나타났으며, “어릴 때 습관이 산업현장에

서 그대로 적용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에서는 정규직 4.55(.49), 비정규직 4.27(.44)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52(.50), 비정규직 4.30(.46)으로 나타났으며, “요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시설물이나 기계보다 사람의 의식부재로 인한 사고율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40(.49), 비정규직 4.25(.43)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직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도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30>과 같다.

<표 IV-30>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도 (%)

		산업재해 의 종합관리 체제 정립	안전 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	산업안전 관련 법률 정비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근로자 의 처우 개선	전체	χ^2
교육 종사 직종	정규직	0(0.0)	0(0.0)	0(0.0)	122(65.2)	65(34.8)	187(100.0)	39.447***
	비정규 직	0(0.0)	0(0.0)	0(0.0)	197(90.8)	20(9.2)	217(100.0)	
	전체	0(0.0)	0(0.0)	0(0.0)	319(79.0)	85(21.0)	404(100.0)	

***p<.001

<표 IV-30>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482$,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근로자의 처우개선”으로 나타났다.

사.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응급처치의 차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응급처치 차이에 대한 t-검증의 결과는 <표 IV-31>과 같다.

<표 IV-31>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응급처치의 차이

구분	M	SD	t-test
교육종사 직종	정규직	4.19	3.338***
	비정규직	4.07	

***p<.001

<표 IV-31>과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직업안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응급처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338,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응급상황 시 행동 수칙을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40(.49), 비정규직 4.14(.35)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36(.48), 비정규직 4.13(.34)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경우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정도 식혀주고 항생제연고나 화상용 연고를 발라 준 후 상처부위를 소독한 거즈로 덮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51(.50), 비정규직 4.31(.46)으로 나타났으며, “물에 빠졌을 경우 의식이 있는 경우에 젖은 옷은 벗기고 몸을 담요 등으로 덮어 옆으로 눕힌다. 잘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38(.48), 비정규직 4.23(.42)으로 나타났다. “팔이나 다리에 멍이 들었을 때는 차가운 찜질을 하면서 심장보다 높게 해 주고 24시간 후에는 따뜻한 찜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37(.48), 비정규직 4.19(.39)으로 나타났으며, “선한 마리아인 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에게 큰 피해가 없음에도 도와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하는 법입니다. 알고 있습니까?”에서는 정규직 4.39(.48), 비정규직 4.22(.41)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 이수 현황에 대한 표집 응답자들의 교육종사 직종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IV-32>와 같다.

<표 IV-32>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 이수 현황 (%)

		5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1회만	전혀 없다	전체	χ^2
교육종사 직종	정규직	34(18.2)	115(61.5)	32(17.1)	5(2.7)	1(0.5)	187(100.0)	73.749***
	비정규직	29(13.4)	63(29.0)	57(26.3)	30(13.8)	38(17.5)	217(100.0)	
전체		63(15.6)	178(44.1)	89(22.0)	35(8.7)	39(9.7)	404(100.0)	

***p<.001

<표 IV-32>와 같이 교육종사 직종에 따른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 이수 현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3.496$,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2회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5회 이상”, “1회 이상”, “1회만”, “전혀 없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2회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1회 이상”, “전혀 없다”, “1회만”, “5회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교안전도에 대한 교육종사 직종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종사 직종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자료는 직접 배포한 설문지 450부 중 분석에 문제가 있는 46부를 제외하고, 최종 404부를 사용하였다.

1. 결론

본 연구를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육 종사자들의 학교안전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안전의식에 대한 차이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도에 대한 교육종사 직종별의 인식 차이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담임교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정규직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에 비정규직은 안전관계 행사시에 실시하며, 한 학기 학생대상 안전교육 횟수는 정규직은 21회 이상, 비정규직은 3-5회로 나타났다. 1회의 평균교육 시간은 1시간 미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교육 방법은 시청각 매체활용과 강의형식이 대부분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는 정규직은 평가하지 않음이, 비정규직은 이론 및 실기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 비중은 정규직은 충분하다, 비정규직은 보통이다가 높게 나타났다. 안전교육을 자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규

직과 비정규직 모두 다른 주지 과목으로 인한 수업 시수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교육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평소 안전습관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안전교육 계획안 수립과 실행은 정규직은 안전교육계획안을 작성하지 않고 일일교육계획안에도 기초하지 않지만 상황이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실시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은 안전교육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지만 일일교육계획안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는 보통 이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학생대상 안전교육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대상 안전교육 운영 형태는 정규직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재량활동, 비정규직은 정규수업 시간 중 독립과목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대상 안전교육 주기는 정규직은 일주일 주기, 비정규직은 한 달 주기가 적당하다고 나타났으며, 실시횟수는 1회, 1시간 미만이 가장 적당하다고 나타났다. 교육은 정규직은 담임교사, 비정규직은 외부강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좋으며, 평가방법은 정규직은 관찰 및 태도, 비정규직은 이론평가 및 실기평가 방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종사 직종별의 인식 차이에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에서 교육종사 직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안전의식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장소는 도로, 노상, 역, 정류소 등 이동공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은 운전자,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으며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의 교육은 90%이상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본 연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 자료제공과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각각의 학교안전도의 인식과 안전의식의 실태를 분석하고 파악하였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안전도 인식에 대한 연구는(“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범위”(한승희, 1999),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태도에 관한 연구”(이정춘, 1999),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책임한계”(박재향, 2002),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교사 인식 분석”(구현자, 2005),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창희, 2010),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터한 대전광역시 초등학교의 안전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박재희, 2013), “학교사고 발생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판단 기준”(최기영, 2014),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박세철, 2015),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고영택, 1991),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안전교육 실태 비교”(김지영, 2009),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박현근, 2007),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연구”(홍정순, 2006)) 다수 있지만 교육 업에 종사하는 정규직(교사)과 비정규직(방과후강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안전도 인식과 안전의식의 실태 분석에 대한 차이를 비교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학교안전도의 인식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안전도에 대한 교육종사 직종별의 인식 차이에서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좀 더

체계화된 안전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 박재희(2013)와, 김지영(2009)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초등학생 때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김지영(2009)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에 담임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과 달리 김지영(2009)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가 가정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결과는 교사들 스스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가정에서 하는 안전교육보다 훨씬 체계적이며 효율적이기 때문에 학교중심의 안전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는 성장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요인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 학생들과 교육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증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종사 직종별의 인식 차이에서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책임감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도 정규직에 준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규직과 똑 같은 교육연수와 복지 같은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전사고 발생 시 정규직(교사)들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비정규직(방과후강사 등)들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고영택(1991)은 선행연구에서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은 주로 물적, 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간의 사고, 교수·학습과 관련된 사고, 학교시설물로 인한 사고, 교외학습 활동 등이었다.

학교 안전사고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대리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나타난 박재향(2002)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정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자료와 학생생활과 관련된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실시되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활동이 정규직에게만 실시되고 비정규직에게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의식 향상은 학생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선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문헌

- 강운현(2016). 학교폭력 치유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임상적_신경심리학적_뇌구조적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지숙(2016). 초등학생의 불안수준에 따른 인터넷 중독.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택(1991).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16).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
- 구현자(2005).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교사 인식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수(2015).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 권정관(2012).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분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아(2000). 서울시 고등학생의 안전교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이화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연(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기간 및 이용 동기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09).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안전교육 실태 비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기(2014).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길(2004). 서울초등학교의 안전교육현황과 교내안전사고 실태조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윤신(2014). 학교안전사고 통계분석 및 예방정책수립방안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원 정책연구과제.
- 노연순(2014).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배제대학교 교육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 노정해(2015).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책임**.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철(2015).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향(2002).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책임한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희(2013).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터한 대전광역시 초등학교의 안전 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근(2007).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동현(2007).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연(2013). **학교폭력 및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대한 교사·학생의 인식**.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연(2015). **괴롭힘 상황에서 자기 주장성과 주변인의 행동유형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춘(1999).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태도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희(2010).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혜(2014).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라(2016). **학교폭력의 실태, 예방 방안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인식의 비교분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호(2016). **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조직의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연경(2016).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및 관리에 대한 교사들의 어려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2013).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
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혜(2013). 초등학교 남아의 인터넷 폭력게임 사용시간과 게임중독정
도가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 태백장성초등학교(2016). 위기대응 능력신장. 안전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 최기영(2014). 학교사고 발생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판단 기준. 경인
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2016). 학교안전 행정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
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송우(2007). 초등학교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 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학교안전공제회(2011). 학교안전사고 통계 체계 개선 및 학교안전교육 활
성화 방안 연구.
- 한승희(1999).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범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정순(2006).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연구. 강릉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evelopment of Health(1992). The Health of the Nation, pp. 134-135.
- Develop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91). Health United States
DHHS Pub, No.(PHS) 92-1232: pp. 161-162.

<부록>

설 문 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초등학교 교육종사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지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전공
corea@pukyong.ac.kr, 010-7258,8381, 051-817,7777

_____ 귀하

안녕하세요,

다음 질문들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초등학교 교육종사자의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 및 분석결과는 연구를 위한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고 성실히 응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한시간 내어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02월 10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자 위 국 환 올림

※ 설문응답방법

1.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질문을 읽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항에 응답할 때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귀하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설문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5	귀교에서 1회 안전교육이 실시될 때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① 30분미만 ② 1시간미만 ③ 1-2시간 ④ 3-4시간 ⑤ 5-6시간 ⑥ 기타(_____)
6	귀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까?	① 강의형식 ② 시청각 매체 활용 ③ 토론형식 ④ 체험활동형식 ⑤ 방문견학(경찰서, 소방서등) ⑥ 기타(_____)
7	귀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까?	① 이론평가 ② 실기평가 ③ 이론 및 실기 평가 ④ 평가 하지 않았음 ⑤ 기타(_____)
8	선생님께서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 비중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지 않다 ⑤ 매우 충분하지 않다
9	대체로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빈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김지영 2009). 이처럼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자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사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② 안전교육을 위한 검증된 교재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③ 안전에 관한 교사의 지식이 부족해서 ④ 다른 주지 과목으로 인한 수업 시수가 부족해서 ⑤ 학교 예산과 지원이 부족해서 ⑥ 학생 및 학부모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⑦ 안전 교육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⑧ 여러 과목에 분산되어 있어 학문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⑨ 기타(_____)
10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큰 교육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안전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 습득 ② 학생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평소 안전 생활습관의 형성 ③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습득 ④ 자신과 남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육성 ⑤ 기타(_____)
11	선생님께서서는 학생 대상 안전교육의 계획안 수립과 실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① 안전교육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실시한다. ② 안전교육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지만 일일교육계획안 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교육계획안을 작성하지 않고 일일교육계획안에도 기초하지 않지만 상황이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실시한다. ④ 안전교육계획안이 작성 되지 않고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만 실시된 ⑤ 기타(_____)

12	귀교에서는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② 조금 준비되어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다 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13	귀교에서는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활용되고 있다 ② 조금 활용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⑤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
14	선생님께서서는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	선생님께서서는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운영 형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규수업 시간 중 독립과목으로 ② 방과 후 활동 ③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재량활동 ④ 동아리 활동 ⑤ 학교 외에 개인적으로 학업 ⑥ 수시로(조회, 종례 시 등) ⑦ 일반수업 시간 중 과목명: _____) ⑧ 기타(_____)
16	선생님께서서는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주기는 어느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루 ② 일주일 ③ 한 달 ④ 한 학기 ⑤ 한 교육종사 직종별에 따른 ⑥ 기타(_____)
17	위에서 응답하신 주기에 안전교육 실시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기타(_____)

18	선생님께서서는 학생들이 받는 1회 안전교육시간은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30분미만 ② 1시간미만 ③ 1-2시간 ④ 3-4시간 ⑤ 5-6시간 ⑥ 기타()
19	선생님께서서는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누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체육교사 ② 보건교사 ③ 과학교사 ④ 담임교사 ⑤ 외부강사(소방관, 안전교육 전문가 등) ⑥ 기타()
20	선생님께서서는 학생대상 안전교육 방법 중 가장 필요하며 효과 적인 교육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방문견학을 통한 교육방법으로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진 한다. ②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진 한다. ③ 토론형식으로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진 한다. ④ 이론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학생의 안전지식을 높여 안전사고를 줄인다. ⑤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인다. ⑥ 기타()
21	선생님께서서는 안전교육 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론평가 ② 실기평가 ③ 이론평가 및 실기평가 ④ 보고서검토 ⑤ 관찰 및 태도 ⑥ 기타()

다음은 생활안전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해 주세요.

1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2	귀하는 일상생활 중 본인의 안전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3	집안의 욕실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설치 사용하며 식탁의 모서리, 문틈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4	가위, 목공도구, 청소용구는 안전하게 보관하며 사용방법을 숙지를 하고 사용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5	코드(선)를 잡아당기면 피복안의 구리선이 끊어져 화재와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6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고 사용하면 전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7	귀하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장소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① 가정 등 주거 공간 ② 상가업소 유흥시설 ③ 놀이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④ 학교·직장사업장 ⑤ 도로, 노상, 역, 정류소 등 이동 공간				

다음은 교통안전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해 주세요.

1	교통규칙 및 신호를 잘 지킨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2	차량 이용 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 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⑤ 매우 중요하 다	⑤ 전혀 모른다.
3	자동차 앞좌석 뒤 자석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며 아이들은 뒤 자석에 태웁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비 오는 날 밝은 색의 옷을 입으며 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지키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⑤ 매우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5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6	자전거를 탈 때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이용합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⑤ 매우 중요하 다	⑤ 전혀 알지 못한다.
7	우리 사회에서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운전자 부주의 ② 보행자 부주의 ③ 교통 혼잡 ④ 운전자,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 ⑤교통신호체계 및 도로구조의 잘못				

다음은 폭력 및 신변안전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해 주세요.

1	학교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2	성폭력에 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⑤ 전혀 모른다.	⑤ 전혀 할 수 없다
3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가해 학생을 상담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전혀 할 수 없다
4	학교폭력이 가해자, 피해자 외 목격하는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는가?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5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6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학교에 알리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⑤ 전혀 알지 못한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학교폭력이 발생하며 피·가해 학부모에게 상담을 합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다음은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해 주세요.

1	약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2	사이버(모바일) 중독에 빠진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⑤ 전혀 모른다.
3	본인도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자주 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담배·술·마약류가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5	학교 내 흡연과 음주를 하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6	약이나 화학약품을 잘 못 먹었을 경우,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⑤ 전혀 알지 못한다.
7	증상이 비슷하면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다음은 재난안전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해 주세요.

1	우리 사회는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2	가정 내 재난대비용 비상용품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3	재난이 발생 했을 때 학생들에게 신속한 대피를 유도 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4	대피 시 차를 타지 않으며 필수용품만 가지고 피난한다는 요령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5	지진대피 대처 방법 중 집 안에 있을 때와 집 밖에 있을 때, 운전 중일 때 학교 안에 있을 때 각각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6	지진이 나면 좁은 길이나 담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갑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7	낙뢰가 발생하면 벽과 기둥에 기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다음은 직업안전도 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해 주세요.

1	귀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2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안전교 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와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4	어릴 때 습관이 산업현장에 서 그대로 적용 된다는 사실 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5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면 근 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6	요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시설물이나 기계보다 사람의 의식부재로 인한 사 고율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 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 다	⑤ 매우 중요하 다
7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귀 하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산업재해의 종합관리 체제 정립 ② 안전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 ③ 산업안전 관련 법률 정비 ④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⑤ 근로자의 처우개선				

다음은 응급처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해 주세요.

1	응급상황 시 행동 수칙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2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3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경우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정도 식혀주고 항생제연고나 화상용 연고를 발라 준 후 상처부위를 소독한 거즈로 덮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4	물에 빠졌을 경우 의식이 있는 경우에 젖은 옷은 벗기고 몸을 담요 등으로 덮어 옆으로 눕힌다.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5	팔이나 다리에 멍이 들었을 때는 차가운 찜질을 하면서 심장보다 높게 해 주고 24시간 후에는 따뜻한 찜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6	선한 마리아인 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에게 큰 피해가 없음에도 도와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하는 법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7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5회 이상 ② 2회 이상 ③ 1회 이상 ④ 1회만 ⑤ 전혀 없다				

☞학교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